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801-01



www.mtrace.go.kr

쇠고기 이력제 업무편람

2011. 6.



목 차

I . 이력제 개요	1
1. 이력제 정의	3
2. 이력제 개념	4
3. 도입 배경	4
4. 국내외 주요 사례	5
5. 기대효과	6
II . 이력제 추진현황	7
1. 이력제 추진경과	9
2. 이력제 추진체계	11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13
III . 세부 업무 매뉴얼	15
1. 사육단계	17
2. 도축단계	29
3. 포장처리단계	34
4. 판매단계	43
5. 묶음번호 관리요령	49
6. DNA 동일성검사	51

IV.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55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10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12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141
5. DNA 동일성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157
6.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제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4
7.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210
8.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220
9.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224
10. 한우 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226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261
1. 목적과 정의	263
2. 소 사육단계	265
3. 소 도축단계	283
4.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294
5. 쇠고기 판매단계	303
6. DNA 동일성 검사	313
7. 위반자 처분	319
8. 기타 사례	323
VI. 참고자료	327

I

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 3
2. 이력제 개념 / 4
3. 도입 배경 / 4
4. 국내외 주요 사례 / 5
5. 기대효과 / 6

I

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 이력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법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식품법 :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이력관리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2 이력제 개념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개체식별 확인을 위해 도축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도입 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증대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4 국내외 주요사례

가. 일본

- 소 개체식별제도 구축을 위해 **2004년**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한다는 계획 하에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97~2001년까지 약 30만두의 젓소에 대해 귀표부착·관리
- '01. 9월 BSE 발생이후 '01.10부터 가축개체식별 긴급정비사업 추진
 - '01.10~'02.6월까지 모든 소(약450만두)에 귀표 부착 완료
-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03.6)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농가의 출생·이동 및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도축 이후 가공·판매·음식점 등 유통단계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

나. EU

- 가축방역 및 축산장려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2년부터 행정지침에 의거 가축의 보유상태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92/102/EEC)
- '97년 소의 개체식별제도 도입, 98.1부터 시행(EU Council Regulation No 820/97)
 - 개별 소마다 패스पोर्ट를 부여하여 질병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동시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
- **2000년**부터 쇠고기의 유통단계 시행(No.1760/2000)
 -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판매
- **2005. 1월**부터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Traceability** 적용 의무화

다. 호주

- 1999년 EU 요구에 따라 국가가축개체식별체계(NLIS) DB구축, EU 수출용소에 우선 적용(Victoria주)
- 2004년 NLIS를 Traceability사업의 표준으로 결정하고, 모든 주에서 귀표 부착 의무화

라. 미국

- 2003년 12월 US. Animal Identification Plan(USAIP) 발표하여 2004년 7월까지 모든 주에서 농장식별체계를 갖추도록 추진
- 2005년 5월 USDA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1월까지 NAIS(가축개체식별체계) 기준에 따르는 농장과 가축등록 완료 계획

5 기대 효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 최소화
 - 소의 BSE 등 각종 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도 기여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

II

이력제 추진현황

1. 이력제 추진경과 / 9
2. 이력제 추진체계 / 11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 13

II

이력제 추진현황

1 이력제 추진 경과

- '04.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 보완
 - '04 :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실시
 - 홈페이지 구축, 도축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대상 사육두수 : 40천두)
 - '05 : 14개 브랜드 경영체 참여 및 DNA 동일성검사 실시
 - DNA 동일성검사 전문 인력 채용(3명) 및 실험실 확보
 - 도축장 13, 가공장 13, 판매장 30개소 연계(대상 사육두수 : 59천두)
 - '06 : 20개 브랜드경영체와 3개 시·군 참여
 - 도축장 21, 가공장 24, 판매장 93개소(대상 사육두수 : 214천두)
 - '07 : 경기도, 25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 등에서 참여
 - 도축장 39, 가공장 32, 판매장 178개소(대상 사육두수 : 730천두)
- '07.12.21「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 '08.12.22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09. 6.22부터 법 적용
- '08년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시행
 - '08.12.22부터 소의 출생·이동 신고 및 귀표부착 등 사육단계 적용
- '09.06.22. 쇠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 소의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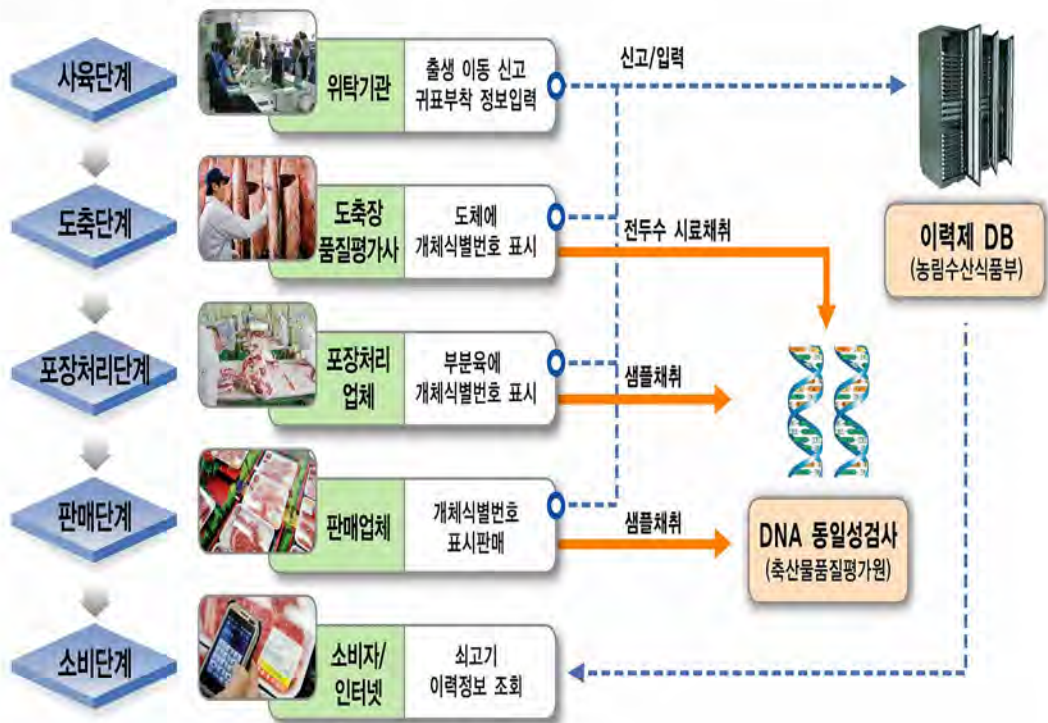
- '10.05.2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10.12.22부터 이 법의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 시행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0.12.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10.12.22일부터 통관에서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1.06.22부터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 출생 등 신고기한: 5일 이내, 육우 귀표부착 기한: 7일 이내

- '11.12.22부터 의무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범위 확대(종업원수 5명 이상)

2 이력제 추진체계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11. 6.22부터)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137개 위탁기관에서 업무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육우는 7일 이내 귀표 부착, 그러나 한우와 젃소는 종전대로 30일 이내 부착

② 도축단계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품질평가사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③ 가공단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포장처리실적을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고, 판매·반출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기록 보관

④ 판매단계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⑤ 소비단계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1. 기관별 추진체계



2.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수산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총괄 및 지도 감독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육·도축·가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단계 보고 및 출입 검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수의과학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질병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기 이력시스템 DB 운영 소 개체식별대장의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DNA 동일성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귀표의 부착 지원

Ⅲ

세부 업무 매뉴얼

1. 사육단계 / 17
2. 도축단계 / 29
3. 포장처리단계 / 34
4. 판매단계 / 43
5. 묶음번호 관리요령 / 49
6. DNA 동일성 검사 / 51

Ⅲ

세부 업무 매뉴얼

1

사육단계

1. 소의 출생신고

가.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나. 신고방법

-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면 지역의 위탁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출생신고를 하는 자는 <표1호>서식의 ‘출생 등 신고서’ <음영부분>를 작성,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위탁기관은 고령 등의 농가가 요청한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 신고기한

- 출생한 날부터 5일 이내(‘11. 6.22.부터 적용)

라. 신고내용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음영처리 부분을 서면이나 구술 등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신고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 서식으로 작성가능

마. 신고서의 기록·관리

- 위탁기관에서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 <표1호> 서식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록·보관
- 위탁기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 가능

(뒤쪽)

적는 요령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⑮란을 적습니다. ⑧~⑩란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⑫란의 소의 종류 및 ⑬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⑭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 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 및 양수 신고는 ①~⑤란과 ⑯~㉑란을 적습니다. 또한, ⑯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㉒란을 적고, ㉒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되는 숫자에 ○표 표시(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소의 양도·양수(도축출하 포함), 수입·수출, 폐사신고

가.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가 양도·양수 또는 수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를 생우로 수입한 경우
- 소가 폐사된 경우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

나. 신고방법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표2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의거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
 -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양도·양수, 수입·수출 불가
-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도축의뢰자는 출하농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

다. 신고기한

- 양도·양수·폐사 : 사유 발생 일부터 5일 이내(‘11. 6.22부터 적용)
- 수입·수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라. 신고내용

-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의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음영처리 부분을 서면 등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신고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가능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도축검사신청서에 출하농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제출

적는 요령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⑧~⑯란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⑫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⑭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⑮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 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 및 양수 신고는 ①~⑤란과 ⑯~㉑란을 적습니다. 또한, ⑯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㉒란을 적고, ㉒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 한우, 2.젓소, 3. 육우, 4. 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젓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젓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젓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3. 변경신고(기록누락 오류수정 포함)

가. 신고대상

- 출생 등 신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통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통신고 사항 이외의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신고방법

- 소의 소유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는 <표3호>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T.1577-2633)로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이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다. 신고내용

- 변경신고
 -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통신고 사항(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표3호>에 의한 변경신고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가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
 - 이력지원실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두어 운영
- 기록·누락오류 수정 신고
 - 기록·누락 오류 수정의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 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

<표3호>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 사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4. 귀표부착의 예외시 조치










가. 귀표부착 예외 대상

-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귀표부착의 예외로 규정한 경우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나. 처리 방법

- 소 사육농가 중 귀표부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귀표 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표4호>서식에 따른 ‘귀표부착예외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당해 위탁 기관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 소유자는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5.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p>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p>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럼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 체계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귀표의 규격</p>	<p>가. 규격</p> <p>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p> <p>2) 글자 색상: 검은색</p> <p>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p> <p>나. 재부착용 귀표</p> <p>1) 크기: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p> <p>다. 귀표 모양</p> <table border="1" data-bbox="395 964 1126 1197"> <thead> <tr> <th colspan="3">귀표 모양</th> </tr> <tr> <th>일반형 귀표</th> <th>단추형 귀표</th> <th>재부착용 귀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p>3. 귀표의 부착방법</p>	<p>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p>									
<p>4. 귀표의 관리 등</p>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나.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표5호>

사육단계 업무 흐름

업무흐름		추진내용
① 출생(수입·수출)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출생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귀표 부착 ○ 귀표부착 후 이력시스템에 정보 입력
② 양도·양수, 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양도·양수,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 신청서에 기재 통보
③ 개체식별대장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신고된 사항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
④ 귀표부착예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2 도축단계

1. 도축신고(도축출하신고 포함)

- 소유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장 경영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소유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의뢰시 농가명(최종 소유자 등), 주민등록번호,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소유자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도축장 경영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별표3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신고
- 신고기한
 -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

○ 도축단계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p>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등</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해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2.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방법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
- 검사관은 <표6호>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은 개체식별번호 부여
- 검사관은 부여받은 번호를 해당 도체에 부여
- 도축장 경영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 하여야 함
 -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거 이력제 전산망으로 입력 된 경우 개체식별 대장에 등록 한 것으로 같음
-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4.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도축이 완료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후 해당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DNA검사실로 이송

<표7호>

<도축단계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 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② 개체식별번호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③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④ 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⑤ DNA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⑥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3 포장처리단계

1. 식육포장처리 실적 신고

가. 신고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 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11.12.22.부터 적용)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나. 신고기한

-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 신고내용

- 시행령에서 지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표8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함
- 해당 쇠고기의 판매 또는 반출 시 판매·반출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이력시스템에 전산입력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p>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p>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2. 장부의 기록 방법

○ 대상

- 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
- 법 시행령 지정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 기록내용

- 시행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표8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포장처리 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표9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 시행령으로 지정 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에도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표8호>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표9호>서식에 의한 쇠고기 포장처리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식육포장처리 신고 사업자 지정 신청

○ 대상

- 시행령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신고내용

- 신고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표10호>의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영업허가증 사본,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서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표11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함

<표11호>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작업장 면적	종업원 수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판매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제21조제2항에 따라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인

<표12호>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 가공장 입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② 발골·정형		○ 가공장에 입고된 도체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③ 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지를 포장지에 부착
④ 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지를 겹포장지에 부착 -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
⑤ 출하		○ 거래명세서와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4 판매단계

1. 판매업체 의무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2. 전산입력

-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관리 하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표13호>의 이력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관리제 전산시스템 등록 업무 담당자

<대표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문의 : 031-390-5554

팩스 : 031-390-5594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관리





구 분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 번호 표시 방법	<p>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 번호 관리	<p>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5.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정보 제공

-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개체이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인터넷,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게시
- 정보의 공개 항목
 - 개체식별번호,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종류, 암수 구분, 소유자등의 성명, 사육시설의 소재지,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표15호>

판매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 판매장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 등 기록관리
② 부분육의 소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③ 개체식별 번호게시 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④ 이력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 정보 공개

5 묶음번호 관리요령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표 16호>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등급표시 의무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 묶음번호는 로트(Lot)번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6 DNA 동일성 검사

1. 검사추진체계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나. 시행기관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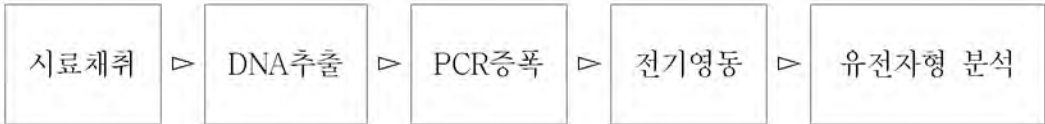
다. 이력단계별 ‘지도단속’과 이행실태 ‘모니터링’ 병행 실시

- 지도단속 : 시·도(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식육판매업소)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이력단계별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기관)
 - 사육단계 : 시·도(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표본검사)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도축 전두수 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 판매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라. DNA동일성검사의 분석 및 판정절차

○ 분석과정

- 일반적인 DNA동일성검사의 분석과정은 5단계로 실시








DNA동일성검사 분석과정



2. DNA 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DNA 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방법

	업무흐름	추진요령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cm×10cm)에 밀봉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담당자간 서명날인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검사용 지정봉투의 추가봉인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cm×30cm)에 넣음
검 사 실 우 송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가공장·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 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다. 시료채취 및 우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 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다른 개체 같다고 판명이 날 수도 있음
 - 사용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동일성검사 의뢰서 및 시료봉투작성은 불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IV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57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 110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112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141
5. DNA 동일성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157
6.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제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4
7.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 210
8.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 220
9.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 224
10. 한우 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 226

IV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요령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추진경과

- 가. 2007년 6월 15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하도록 의결함.
- 나. 2007년 9월 18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소위원회 주관으로 10월중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
- 다. 2007년 10월 11일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라. 2007년 11월 16일 제6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 가결함.
- 마. 2007년 11월 21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 바. 2007년 11월 22일 제269회 정기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제정안을 원안 통과(참석 174명중 찬성169, 기권5)
- 사. 2007년 12월 21일 법률 공포(관보 게시)
- 아. 2010.05.2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자. 2010.12.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제정사유

한·미 FTA 협상타결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전면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많음.

EU를 비롯한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광우병 파동 이후 이력추적(Traceability)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03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 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에도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 포함)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법 제3조).
- 나. 농식품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법 제4조)
- 다.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개체별 기록하도록 함(법 제6조).
- 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가능 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마.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법 제18조부터 제20조)
-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법 부칙 제1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0.12.22] [법률 제10311호, 2010. 5.25, 전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0.12.22] [대통령령 제22533호, 2010.12.20, 전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0.12.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2010.12.22, 전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수입유통식별번호”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p> <p>4. “소의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p> <p>5. “도축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식육포장처리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7. “식육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8. “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9. “쇠고기 수입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말한다.</p> <p>10. “귀표”란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 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 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12.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이하 “개체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13. “수입유통식별쇠고기”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p>		<p>제2조(부산물의 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14.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대상 쇠고기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를 말한다.</p> <p>15. “수입”이란 외국 소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소 및 개체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p> <p>제4조(출생 등의 신고) ①</p>		<p>“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위해쇠고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p> <p>제4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p>과 절차 등) ①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p> <p>제5조(출생 등 신고의 기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의 경우 기한 전에 해당 소가 사육지에서 이</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품부장관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p>	<p>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2.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p>제6조(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p> <p>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 허가증 사본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p>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축산</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물품질평가원에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①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p> <p>제8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귀표의 부착)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p>		<p>까지 하여야 한다.</p> <p>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p> <p>2. 식육포장처리업자: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p> <p>제9조(귀표의 부착기한 등)</p> <p>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전에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1. 출생 신고된 소: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p> <p>2. 수입 신고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p> <p>② 출생 신고된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귀표의 위조·변조 및</p>		<p>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0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소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1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p>제3조(귀표 부착 등의 예외)</p> <p>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 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p> <p>6.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들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제4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제12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양수 및 폐사 내역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고 확인한 해당 소의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5.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등급판정 결과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그 밖에 개체식별대장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개체식별대장 기록 누락시의 조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p>		<p>6.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p> <p>7.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p> <p>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소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0조(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p>		<p>있는 서류</p>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14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p>		<p>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p> <p>2.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5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5에 따른다.</p> <p>제16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p> <p>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 쇠고기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p> <p>제 12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의 효율적</p>		<p>제17조(개체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법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5.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p>제 18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수산물품부장관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 등) ①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 쇠고기를 소유·관리하는 자 (해당 쇠고기의 운송위탁을 받은</p>		<p>번호의 발급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이전까지로 한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8에 따른다.</p> <p>제19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운송업자를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p>	<p>제5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수입신고)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p>	<p>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p> <p>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p> <p>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제20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거래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7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4.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 	<p>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쇠고기 수입업자: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p> <p>제21조(거래신고 대상 식육</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1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 (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 	<p>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p>	<p>포장처리업자 등의 지정)</p> <p>①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p>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제22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하증권번호 2. 수입신고필증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 다)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p> <p>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p> <p>4. 거래품명</p> <p>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p> <p>6. 쇠고기 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7.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역</p> <p>8.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p> <p>9.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수입유통관리대장의</p>		<p>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p> <p>6.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 여부</p> <p>7.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신고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변경신고) 쇠고기 수입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 확보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p>	<p>제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제23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오류가 있으면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0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p>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원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24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1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2에 따른다.</p> <p>제25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판매업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5.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6.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 독</p> <p>제21조(시정명령)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은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20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p>		<p>제26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p>	<p>제8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칭 및 소재지</p> <p>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유통기한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증명서의 교부)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접수한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수입 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해당 수입 쇠고기가 수입 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7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5</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p>		<p>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3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한다.</p> <p>제26조(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관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소 및 쇠고기</p>	<p>제10조(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절차)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1. 협조가 필요한 사유</p>	<p>신청</p> <p>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p> <p>5.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p> <p>6.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관리</p> <p>7.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 신고</p> <p>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p> <p>9.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p> <p>1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p> <p>11.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p>	<p>2. 협조 기간</p> <p>3. 협조 사항</p> <p>4. 그 밖에 협조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9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p>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정보</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 영업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부여·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① 소 및 쇠고기 이력</p>		<p>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정보</p> <p>3. 그 밖에 검역원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부여·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리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정보처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법 제29조에 따른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 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의 임직원</p> <p>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p> <p>10. 축산물의 유통 또는 도축 관련 전문가</p> <p>11. 수입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임원</p> <p>12. 정보처리 관련 전문가</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3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3조(회의 등) ① 협의회 의 위원장은 협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협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4조(간사) ①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35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p>	<p>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 명령(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식육판매업자 	<p>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무원으로 본다.</p>	<p>의 경우만 해당한다)</p> <p>4.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대장의 기록</p> <p>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p> <p>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및 기록사항 보존</p> <p>6.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한 수정 요구의 접수 및 수정</p> <p>7.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 명령(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8.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소 수입자, 소 수출자 및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9.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p> <p>10.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다만, 제6항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p> <p>11.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및 인증의 갱신</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부 확인</p> <p>12. 법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3.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 소 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4.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정</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21조에 따른 지정 명령(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의</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유자등 및 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p>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4.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5.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의 소유자등 및 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수정요구의 접수 및 수정</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p> <p>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p> <p>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의 접수</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생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p> <p>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비용 지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귀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 칙</p> <p>제32조(벌칙) 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p>	<p>시에 드는 비용</p> <p>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 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p> <p>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 유통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p> <p>6.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 유통식별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p> <p>7.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p> <p>8. 법 제26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p> <p>9.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비용</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8.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p>	<p>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지 아니한 자</p> <p>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p> <p>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p> <p>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p> <p>8.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p> <p>9.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p>	<p>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p> <p>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1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1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15.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16.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 <제10311호, 2010. 5.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의 소유자등이 수입을 신고한 소부터 적용한다.</p> <p>②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 쇠고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기존 소는 이 법에 따</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에 관한 특례) 2011년 12월 21일까지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본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의 출생·폐사 또는 양도·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개체식별쇠고기는 이 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나.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0	40	80	320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0	20	40	160
아.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	20	40	16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자.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 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20	40	80	32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30	60	120	240
파.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30	60	120	240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30	60	120	240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0	40	80	320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부산물물의 범위 (제2조 관련)

	품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선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pleen	
16	소 생식기	Beef Reproductive Organ	
17	소 식용 가죽	Beef Edible Skin	
18	소 신장	Beef Kidney	
19	소 심장	Beef Heart	
20	소 위	Beef Tripe	
21	소 유방	Beef Breast	
22	소 입술	Beef Lips	
23	소 자궁	Beef Uterus	
24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Salted/Brined Beef Gut(Casing)	
25	소 장간막	Beef Mesentery	
26	소 족	Beef Feet	
27	소 지방	Beef fat	
28	소 창자	Beef Gut	
29	소 척수	Beef Spinal Cord	
30	소 췌장	Beef Pancreas	
31	소 편도	Beef Tonsil	
32	소 허파	Beef Lung	
33	소 혀	Beef Tongue	
34	소 횡격막	Beef Diaphragm	
35	소 흉선	Beef Thymus	
3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부위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1조 관련)

<p>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p>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럼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 체계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귀표의 규격</p>	<p>가. 규격</p> <p>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p> <p>2) 글자 색상: 검은색</p> <p>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p> <p>나. 재부착용 귀표</p> <p>1) 크기: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p> <p>다. 귀표 모양</p> <table border="1" data-bbox="399 962 934 1144"> <thead> <tr> <th colspan="3">귀표 모양</th> </tr> <tr> <th>일반형 귀표</th> <th>단추형 귀표</th> <th>재부착용 귀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p>3. 귀표의 부착방법</p>	<p>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p>									
<p>4. 귀표의 관리 등</p>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나.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관련)

<p>1.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개체식별 번호의 관리 등</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해야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p>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p>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p>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p>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p> <p>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p> <p>바. 묶음번호는 로트(lot) 번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2. 묶음번호의 관리</p>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p> <p>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p>
<p>3.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1.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인	1.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영업신고(허가)번호 7. 팩스번호 8. 업종
검사(반입)장소	1.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1. 한글명 2. 영문명 3. 포장수량 4. 순무게
부위	1. 부위명 2. 부위별 수량 3. 부위별 무게
수입내역	1. 화물관리번호 2. 선하증권번호(B/L No.) 3. 생산국

3. 신청서의 기록·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p>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방법</p>	<p>가.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p> <p>나. 검역원장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p>	<p>수입유통식별표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p>
<p>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p>	<p>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p> <p>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에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검역원장의 승인 후에 수정할 수 있다.</p> <p>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p>
<p>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p>	<p>검역원장은 최고기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5.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거래내역 신고서로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 목	내 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양도·양수)	1. 거래일 2. 수입유통식별번호 3. 제품명(부위명) 4. 수량 5. 무게

3.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수입유통 식별번호의 표시방법	<p>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 하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라.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는 물리적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2. 수입유통 식별번호의 관리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용기·포장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훼손되거나 지워진 경우 원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으나,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한다.</p> <p>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p>가.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지판을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p> <p>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3.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제24조제2항 관련)

<p>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p>																												
<p>2. 묶음번호의 관리</p>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p> <p>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 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p>																												
<p>3. 묶음번호의 구성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388 1034 1190 1172"> <thead> <tr> <th></th> <th>기관코드</th> <th>구분코드</th> <th>영업자코드</th> <th>영업장코드</th> <th>묶음날짜</th> <th>일련번호</th> </tr> </thead> <tbody> <tr> <td>길이</td> <td>1</td> <td>2</td> <td>10</td> <td>3</td> <td>6</td> <td>2</td> </tr> <tr> <td>타입</td> <td>영문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d>숫자</td> </tr> <tr> <td>코드</td> <td>A</td> <td>41</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변동</td> <td>변동</td> <td>변동</td> </tr> </tbody> </table> <p>가. 구분코드는 고정값으로 ‘41’을 표기한다.</p> <p>나.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p> <p>다.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p> <p>라.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p> <p>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p> <p>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묶음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p>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p>4.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7조 관련)

1. 도축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2. 영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포장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하며, 포장 처리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3. 영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4.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반출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5.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6.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7.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제외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유의사항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⑮란을 적습니다. ⑧~⑩란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⑫란의 소의 종류 및 ⑬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⑭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⑮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 및 양수 신고는 ①~⑤란과 ⑮~⑳란을 적습니다. 또한, ⑮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㉑란을 적고, ㉒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 한우, 2.젓소, 3. 육우, 4. 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젓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젓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젓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면적	m ²	종업원 수	
신청업종	[]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 식육판매업(수입산)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식육판매업(수입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를 표시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에 √ 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작업장 면적	㎡	종업원 수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판매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1조제2항에 따라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 사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 margin: 0 auto;"> <p>사 전 3cm ×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앞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p> </div>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p>위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조사공무원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기 관 장 명 의 직인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별지 제7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 조)

연월일	수 령			배 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소유자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 이월								
누계(월계)								

유의사항

1. 연월일: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가.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나.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3. 수령자(소유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소의 소유자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검역 시행장

수입 품목	한글명	영문명
	포장수량 (단위:)	순무게(kg, t)

부위	부위명	
	수량 (단위:)	순무게(kg, t)

수입 내역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생산국	

「소 및 최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B/L No.)당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참조' 라고 적고, 뒤쪽의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

[]양도 []양수 []수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수입 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양도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수입유통식별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묵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묵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와 kg(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 30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2009.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1호

개정 2009. 5.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30호

2009. 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2011. 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개체식별대상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이하 “쇠고기 이력관리제”이라 한다)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쇠고기 이력관리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제3조 관련)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권역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다)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옹진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계수동·신천동·미산동·방산동·은행동·안현동·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내동·포동·과림동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양시·안산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용인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평택시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이천한우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권역	(사) 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	경기도 중 김포시에 사육중인 한우
	김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김포시에 사육중인 젃소·육우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여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평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고양시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파주시·연천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포천시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가평군
	안성마춤한우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한우백년 브랜드 소
강원도 권역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원주시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강릉시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양양군·속초시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홍천군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횡성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평창군·영월군·정선군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인제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고성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충청 북도 권역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에 사육중인 한우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충주시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보은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보은군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옥천군·영동군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진천군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음성군
대전 광역시· 충청 남도 권역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천안시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연기군,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보령시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아산시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한우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천군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청양군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한우
	홍성낙농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권역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 (젓소는 제외한다)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젓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하늘소 브랜드 소
전라북도 권역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순창군·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단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무주군·진안군·장수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채보리한우 브랜드 소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전주시·임실군·남원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순창군·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젓소·육우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익산시·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젓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권역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 중인 한우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에서 사육 중인 한우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 중인 한우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 중인 한우는 제외한다)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 중인 한우
	곡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보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 중인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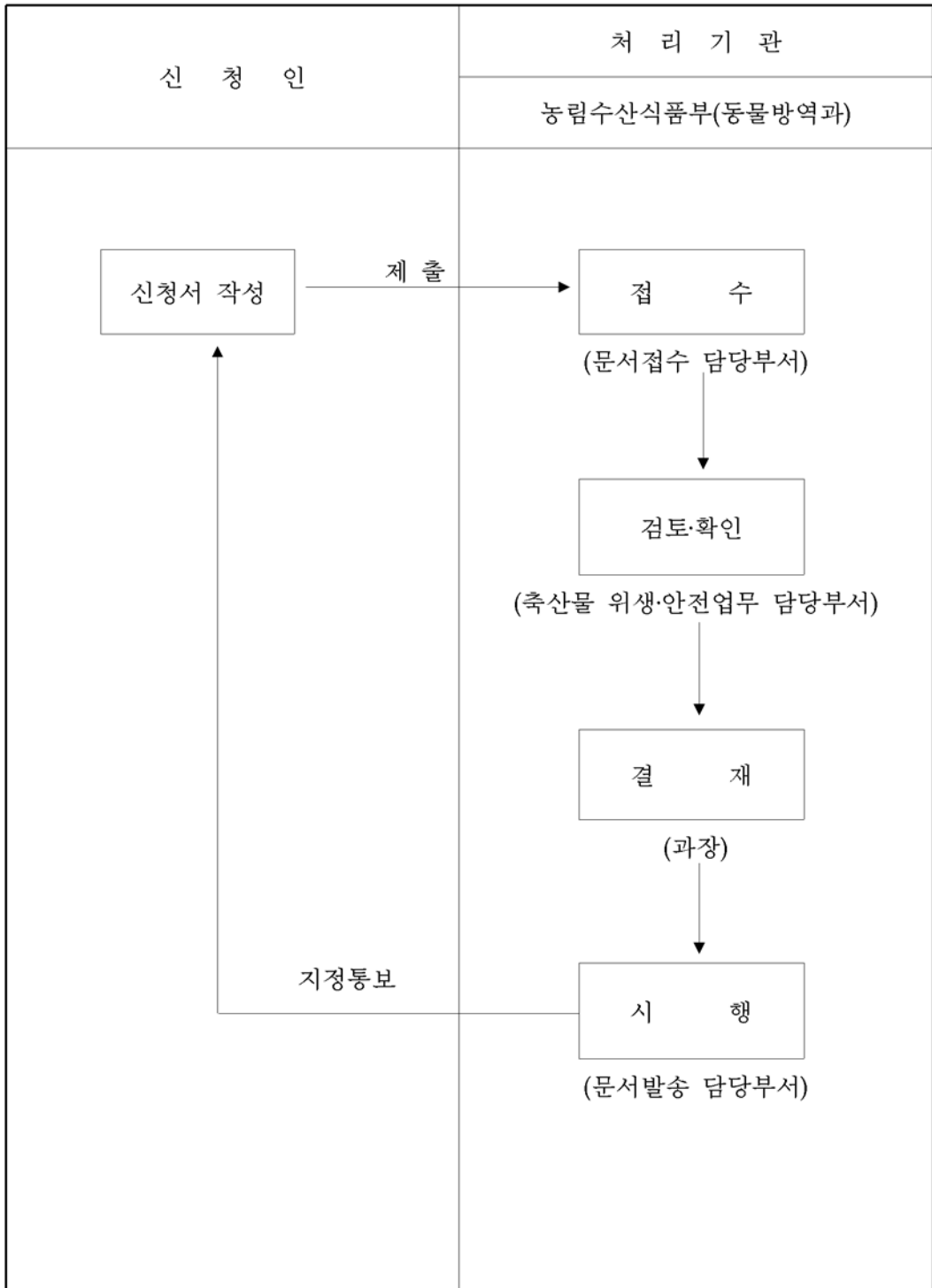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권역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흥군 관산읍·대덕읍·회진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사) 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전라남도 중 장흥군(관산읍·대덕읍·회진면은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해남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권역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한우왕 브랜드 소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포항시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주시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김천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안동시·봉화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주시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천시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상주시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문경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산시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군위군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의성군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덕군·울진군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도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고령군·성주군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예천군
울릉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울릉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권역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양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경상남도 중 양산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원시
	진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통영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사천시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김해시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밀양시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제시
	의령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의령군
	함안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안군
	창녕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녕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고성군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하동군
	산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산청군
	함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양군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창군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기타 권역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탁기관 지정서			
신 청 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p>「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소유자) :

주 소 :

위탁기관 명칭	위탁기관 주 소	위탁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등)	통지사항
<p>「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신고의 접수 및 같은 법 제5조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폐사 또는 양도·양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기관의 장 인</p>			

5 DNA 동일성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 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소 및 쇠고기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57, 2009.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정 2009. 4.2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26호

개정 2009. 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57호

2011. 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개체식별쇠고기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소 및 쇠고기의 조직·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소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소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인 개체식별쇠고기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 기관) ① 시료채취는 법 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육판매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소의 소유자등이 사육하는 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쇠고기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소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는 시·도지사가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4.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

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개체식별쇠고기를 말한다.

② 시료는 소의 소유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개체식별쇠고기에서 채취한다.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보관용·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법 제5조에 따라 귀표가 부착된 소의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개체별로 채취한다.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피채취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의 입회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축장에서 당해 개체식별쇠고기가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파손·손상·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가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당해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수산물부 소속 공무원
2. 국립축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3. 시·도 소속 공무원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
6. 유전자감식 관련 산·학·연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직무 등)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협의회는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제9조제2항 관련)

1. 시료(혈액, 조직, 모근 등)에서 DNA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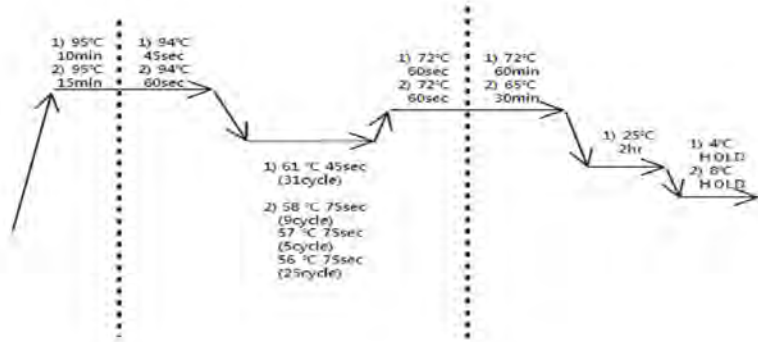
가. 시료채취 도구 및 채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료는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2) 보관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0.5~1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3) 검사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10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4) 혈액은 시료채취 용기에 500μl를 채취한다. (5) 모근은 소의 꼬리털 부분에서 약 20가닥 내외로 시료채취봉투에 채취한다.
나. 조직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멸균된 1.5ml 튜브와 랙, 70% 알코올, 티슈 등을 준비한다. (2) 보관용 시료는 펀칭기를 이용하여 3회 펀칭 후 1.5ml 튜브에 담는다. (3) 검사용 시료는 가위와 핀셋 등을 이용하여 미량 세절 후 1.5ml 튜브에 담는다. (4) DNA추출기구(Toyobo kit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용해·흡착액을 800μl씩 각 시료가 담긴 튜브에 분주한다. (5) 단백질분해효소 K(20mg/ml 농도) 20μl를 각 시료마다 첨가한다. (6) 교반(Vortexing)을 하여 시료와 용액을 섞어준다. (7) 잘 혼합한 후 시료가 완전히 용해될 때 까지 70$^{\circ}$C 교반기 또는 56$^{\circ}$C 항온수조에 약 12시간 정도 넣는다.

<p>다. 조직파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파쇄기(Precelly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에 시료를 쪼갬다. (2) 조직파쇄를 위한 기기의 회전속도는 6,500R.P.M, 파쇄시간은 120초로 한다. (3) 조직파쇄기가 종료되면 시료를 원심분리기로 옮기고 상온에서 기기의 회전속도 13,2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다. (4) 원심분리가 종료되면 뚜껑 없는 새로운 1.5ml 튜브로 상층액을 옮긴다. 이때 피펫에 하층의 응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p>라. DNA 추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NA추출장비(MFX-6100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추출관(Tip), 추출판(Plate), 보관용기(tube) 등을 확인한다. (2) DNA추출장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외선장비(U.V)를 작동시킨다. (3) 상층액을 옮긴 1.5ml 튜브를 DNA추출장비에 쪼갬다. (4) DNA추출장비 프로그램에 맞게 자석 가루와 증류수, 알코올, 세정액 등을 넣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p>마. DNA 농도측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출된 DNA를 교반(Vortexing)한다. (2) 농도측정기(Nanodrop Spectrometer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3) 증류수를 이용해 영점기준(Blank)을 보정한다. (4) 1μl의 DNA 용액(Solution)을 이용해 농도를 측정한다.

2. 검사 마커의 유전자형분석

<p>가. PCR 반응</p>	<p>[PCR 반응 순서]</p> <p>(1) 증폭할 DNA(Template DNA), 시발체(Primer), 완충액(Buffer), 중합재료(dNTPs), 중합효소(Taq polymerase), 증류수(D.W) 등을 준비한다.</p> <p>(2) PCR 튜브를 준비하고 시료가 섞이지 않게 튜브에 표시(Labelling)를 한다.</p> <p>(3) 얼음을 준비하고 -20℃에 보관되어 있는 Primer mix(set), Buffer, dNTPs를 얼음위에서 약 20분 이상 녹여서 사용하며 중합효소는 상온에 있을 경우 활성을 잃게 되므로 시약제조 시 -20℃ 냉동고에서 관리하여야 한다.</p> <p>(4) 증폭할 DNA를 PCR 튜브에 1μl(10~50ng)씩 분주한다.</p> <p>(5) DNA 샘플수에 맞게 Primer mix(set), Buffer, dNTPs, D.W의 제조시약을 만든다. 이때 실험할 샘플수보다 2개 정도 많은 양을 계산하여 제조시약을 만드는데 이는 제조시약을 PCR 튜브에 분주할 때 피펫팅으로 유실되는 양을 보완하기 위함이다.</p> <p>(6) 제조시약(Mixture)을 다 준비했으면 PCR 튜브에 각 14μl씩 분주한 다음 뚜껑을 잘 덮어준다. 잘 덮이지 않으면 PCR 반응 시 높은 온도에 증발될 수도 있다.</p> <p>(7) 시약 분주가 끝나면 PCR 기계(ABI 9700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를 작동시키고 프로그램을 입력한다.</p> <p>(8) 유전자 증폭 장비의 PCR 반응은 [그림 1]과 같이 수행한다.</p> <p>(9) 입력이 끝난 후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고 샘플 고정 블럭이 95℃로 온도가 올라가면 준비된 시료를 블럭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p>
------------------	--

(10) PCR 기기 프로그램 작동이 잘 되는지 첫 중합반응(Cycle)이 실행될 때까지 확인한다.



1) Normal PCR, 2) Touchdown PCR

[그림 1]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

가. PCR 반응

[PCR 반응시약의 제조]

(1) Primer mix(set), dNTPs, Buffer, Taq Polymerase, D.W를 해당 샘플개수에 맞추어 용량을 결정한다.

(2) 시약 조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1) Normal PCR	2) Touchdown PCR
Buffer	3 μ l × X	1.5 μ l × X
dNTPs	4 μ l × X	1.2 μ l × X
Primer mix(set)	5.5 μ l × X	8.25 μ l × X
Taq Polymerase	0.5 μ l (2.5U) × X	0.4 μ l (2.0U) × X
MgCl ₂	-	1.0 μ l × X
DMSO	-	0.25 μ l × X
DW	1 μ l × X	1.4 μ l × X
Total	14 μ l × X	14 μ l × X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마커명 (MARKER)	방향 (Direction)	염기서열 (Primer Sequences)	크기 (Size(bp))
TGLA227	Forward	CgAATTCCAATCTgTTAATTTgCT	76~104 (bp)
	Reverse	ACAgACAgAAACTCAATgAAAgCA	
BM2113	Forward	gCTgCCTTCTACCAAATACCC	123~143 (bp)
	Reverse	CTTCCTgAgAgAAgCAACACC	
TGLA53	Forward	gCTTTCAgAAATAgTTTgCATTCA	154~188 (bp)
	Reverse	ATCTTCACATgATATTACAgCAgA	
ETH10	Forward	gTTCAggACTggCCCTgCTAACA	212~224 (bp)
	Reverse	CCTCCAgCCCACCTTCTCTTCTC	
SPS115	Forward	AAAgTgACACAACAgCTTCTCCAg	246~260 (bp)
	Reverse	AACgCgTgTCCTAgTTTggCTgTg	
TGLA126	Forward	CTAATTTAgAATgAgAgAggCTTCT	116~122 (bp)
	Reverse	TTggTCTCTATTCTCTgAATATTC	
TGLA122	Forward	CCCTCCTCCAggTAAATCagC	137~181 (bp)
	Reverse	AATCACATggCAAATAAgTACATAC	
INRA23	Forward	gAgTAgAgCTACAAGATAAAC	196~222 (bp)
	Reverse	TAActACAgggTgTTAgATgAACTCA	
ETH3	Forward	gAACCTgCCTCTCCTgCATTgg	105~125 (bp)
	Reverse	ACTCTgCCTgTggCCAAGTAgg	
ETH225	Forward	gATCACCTTgCCACTATTTCTT	141~159 (bp)
	Reverse	ACATgACAgCCAgCTgCTACT	
BM1824	Forward	gAgCAAgTgTTTTTCCAATC	178~192 (bp)
	Reverse	CATTCTCCAACtGCTTCCTTg	

가. PCR 반응

<p>나. 전기영동</p>	<p>[전기영동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각플라스크에 Agarose 3.0g과 0.5X T.B.E(Tris-Boric acid-E.D.T.A) Buffer 150ml을 넣어 2% Gel을 제조한다. (2) 먼저 삼각플라스크의 무게를 확인한 후, 전자레인지(micro oven)에 약 3분간 돌려 Agarose Gel을 용해시킨다. (3) 3분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소실된 양만큼의 0.5X T.B.E Buffer를 채워준 후 다시 30초간 돌려준다. (4) 실온에서 천천히 식힌 후, EtBr 7μl을 넣은 후 다시 천천히 식힌다. (5) 온도가 적당히 떨어지면 Gel 응고용 tank에 붓고 굳힌다. (6) PCR product 3μl + D.W 6μl + Dye 1μl을 섞는다. (7) 각 샘플을 Gel 홈에 조심히 넣는다. 맨 처음 홈에는 100bp 표준자(Ladder)를 넣는다. (8) 전기를 (-)에서 (+)로 약 40분정도 흘려준다. (9) 전기영동이 끝나면 Gel을 꺼내어 이미지 장비에서 증폭 유무를 확인하고 렌즈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촬영 후 저장한다. (10)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PCR 산물의 증폭정도를 보고, 희석 배율을 결정하여 DNA 분석에 적합하게 희석한다. <p>[전기영동용 T.B.E Buffer 제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R 증폭유무를 확인하는 전기영동 Agarose Gel을 만들기 위해 T.B.E Buffer를 제조한다.
----------------	---

나. 전기영동	<p>(2) 보통 10배 농축액으로 제조하여 두고 사용 시 0.5배로 희석하여 사용한다.</p> <p>가) 1,000ml비커를 준비하며 Buffer 500ml을 제조 시 그 이상의 비커를 준비하여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나) 비커에 마그네틱 바를 넣는다.</p> <p>다) 비커에 다음의 시약들을 넣는다.</p>		
	제조사약명	시약명	용량
	10X T.B.E	Tris	54g
		Boric acid	27.5g
		E.D.T.A	4.7g
	<p>라) 3차 증류수 500ml를 비커에 조심히 붓는다. 이때 가루의 시약들은 서로 엉켜 붙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혼합해준다.</p> <p>마) Hot Plate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교반 해주며 비커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호일 등으로 윗부분을 덮어준다.</p> <p>바) 증류수(D.W)에 모든 시약이 용해될 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된다.</p> <p>사) 용해가 완료 되면 500ml시약병에 T.B.E Buffer를 담는다.</p>		
	제조사약명	시약명	용량
	0.5X T.B.E	10X T.B.E	50ml
		3차 D.W	950ml
	<p>아) 10X T.B.E Buffer는 Gel 제조 시 0.5X로 희석하여 사용한다.</p>		

<p>다. DNA 판독을 위한 DNA 분석기 작동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R반응이 끝난 시료를 표준 사이즈 자와 Formamide를 혼합하여 희석한다. (2) 혼합된 시료를 95℃에 2분 가열하여 DNA를 변성시킨 후, 변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에 보관한다. (3) DNA 분석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파일명을 입력하고 분석 일자, 분석자명, 시료명, 분석방법 등을 입력한다. (4) 분석기의 뚜껑을 열어 남아 있는 Polymer의 양을 확인하고 Polymer가 누출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프로그램 입력이 끝나면 분석기 내에 사용했던 Buffer 교체, Polymer 량 및 사용기간 확인, Capillary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기에 정확히 위치하게 하여 작동한다.
<p>라. 분석된 DNA 데이터 판독 및 재분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이 끝나면 원본 파일을 DNA판독 프로그램(Gene Mapper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불러와 아날로그 신호를 시료마다 확인한다. (2) 표준 사이즈 마커의 위치와 마커내의 프레임 쉬프트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시료의 마커 사이즈를 확인한다. (3) 아날로그신호로 확인된 유전자 위치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수치화된 값으로 컴퓨터 파일로 기록하여 판독한다.

<p>라. 분석된 DNA 데이터 관독 및 재분석</p>	<p>(4)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에 의하여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대립유전자 값이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 한다.</p> <p>(5) 분석결과 나타난 대립유전자의 피크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즉 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좌우로 길게 늘어진 경우, 신호가 너무 낮아 백그라운드와 혼동될 경우, 여러 개의 피크가 보일 경우, 피크가 너무 높아 분석이 불가할 경우 등의 시료는 처음부터 재분석 한다.</p> <p>(6) 재분석하는 시료의 DNA는 U.V 260nm, 280nm에서 DNA의 양과 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PCR 단계부터 다시 검사하고 분석을 위한 DNA의 양과 질이 검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DNA추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p>
<p>마. 분석결과의 관리</p>	<p>(1) 분석결과는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관련 자료 등을 2년 간 별도 보관·관리 하여야한다.</p> <p>(2) DNA분석결과의 자료보관은 그 품질이 보증되는 외장형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부분은 컴퓨터 외장하드 디스크에 보관한다.</p>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허가(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 취 현 황	개체식별번호 (뭍음번호)			쇠고기의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 취 사 유				
<p>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쇠고기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뭍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뭍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mm×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개체식별번호	채취일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기 관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신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10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개체식별번호	신청일	신청기관	판정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년도 분기)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12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별	검사 구분	DNA동일성 검사		검사 결과			비고
		계획 건수	실적 건수	계	일치	불일치	

기 관 장 (직인)

6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제 조사 요령(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66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방법」의 제3조에 따라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쇠고기의 이력제 조사 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 4.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1. 총칙

가. 목적

이 요령은 판매단계 쇠고기의 이력제 조사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근거법령

-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30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3조 제2항(제2011-31호)

다. 조사대상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따른 개체식별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2. 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영 제11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쇠고기 이력제 조사업무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연구소장

- (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지원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
- (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분석 지원

나. 지원장

- (1) 이력제 조사계획 수립
- (2) 출장소 이력제 조사업무 지도·감독
- (3) 조사반 편성·운영 및 지도·조사, 신고사항 처리
- (4) 이력제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징수
- (5) 출장소장이 신청한 시료의 검사(검사업무 담당지원)
- (6)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7) 이력제 홍보 및 교육

다. 출장소장(지원 업무담당과장 포함)

- (1) 이력제조사 계획 수립
- (2) 조사반 편성·운영 및 지도·조사, 신고사항 처리
- (3) 시료채취 및 검사 신청
- (4) 이력제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구
- (5) 이력제 홍보 및 교육

3. 이력제 표시 조사공무원

가. 원장 및 지원장·출장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쇠고기 이력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나.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조사원의 증표를 발급한다. 다만, 출장소장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장이 소속기관의 조사원에게 조사원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4.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반 편성·운영

가. 조사계획 수립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기 또는 수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1) 정기조사는 지역내 식육판매업소 수, 규모,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조사계획은 연도별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2) 수시조사는 미표시 신고 등에 관련된 식육판매업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조사반 편성·운영

- (1) 조사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조사권한이 없는 가공업체 조사 등의 필요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 합동으로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2) 조사반 편성시 원산지 조사반과 병행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조사사항

- (1)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 (2) 다수의 개체식별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3)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의 교부 여부를 확인한다.
- (4) 장부(거래내역서 등)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5)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신청한다.

5. 세부 조사방법

가. 사전 준비

- (1) 조사공무원증 지참
- (2) 위반확인서 및 의견진술안내서 서식, 카메라, 휴대용 단말기 등 증거 확보를 위한 기자재
- (3) 시료채취용 봉투, 유성 사인펜, 칼 등 시료 채취에 필요한 기구 준비

나. 식육판매업소 방문조사

(1) 방문목적 설명

- (가) 방문시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한다.
- (나) 쇠고기 이력제의 추진배경과 목적, 필요성,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2) 판매 중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조사

- (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쇠고기의 육질·지방·형태 등 특성이 표시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쇠고기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 등급 등을 육안으로 판단한다.
- (나)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쇠고기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3) 영수증 확인 및 추적조사

- (가) 판매표시판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와 장부(거래내역서 등) 및 영수증·등급판정확인서 등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나) 개체식별번호 조회 또는 구입처를 추적하여 거짓표시 여부 확인한다.
- (다) 필요시 축산물품질평가원 해당개체의 공급된 판매내역 요청(전산 기록)하여 확인한다.
- (라)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출장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쇠고기 매입·판매 기록 의무 규정>

업체	기록대상	기록내용	보관기간	근거
식육 판매업	매입 쇠고기	매입처,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	1년간	법 제25조 3항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31조
식육 포장업	포장·판매· 반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판매처 등	2년간	법 제25조 1항

다. 검사용 시료채취 및 검사

(1) 시료 채취

- (가)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가 의심되거나 업주가 시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 (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 입회 하에 개체식별 쇠고기에서 지방을 제외한 살코기 부분을 20g정도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 하여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상호 날인하고 봉인한다.
- (다) 채취한 시료 1점은 검사용으로, 1점은 업주보관용으로 식육판매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계하고 [별지 1]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 (라) 시료는 법 제22조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되, 원산지 조사 등 시료량이 늘어날 경우 시료구입비를 지급한다.
- (마) 업주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손상 또는 오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 (바) 시료채취를 할 때에는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발된 때에 준해 식별번호가 기재된 사진이나 영수증 사본 등 증거자료 확보한다.
- (사) 채취시료와 동일한 보관 중인 쇠고기의 식별번호, 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거래명세표·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이나 사진 등 누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하였는지 여부 확인한다.
- (아) 조사원의 시료채취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그 사실을 확인(확인서에 기록)하고 채취한다.

(2) 검사 신청

- (가)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2] 서식의 시료채취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 (나) 채취한 시료의 검사신청 시에는 [별지 3] 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소·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한다.
- 검사용 시료(1점)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첨부
 - 시료는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 (다) 시료를 받은 검사기관은 [별지 3] 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동일시료 분석을 하도록 신청(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한다.
- * 보관용 시료는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가) 검사기관은 시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 DNA동일성 여부 판정을 신청(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한다.
- * 검사결과 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일치”, “불일치”로 판정
- (나) 검사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별지 4] 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통보일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기관은 “일치”로 통보받은 경우 채취업소에 전화, E-Mail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다) 분석물량 급증 등으로 기한 내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정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4)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시 조치

- (가) 신청기관은 대상업소를 방문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조치한다.
- 시료채취시 확보한 식별번호가 기재된 사진이나 영수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

- (나) 검사기관은 “불일치”판정시료에 대해서는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표시 관련 “한우·비한우” 유전자분석을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 유전자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5) 시료의 보관 및 폐기

- (가) 검사기관은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5] 서식의 검사용 시료 관리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관리한다.
- (나) 검사가 종료된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종료(과태료 납부) 등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6.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 (1)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미표시, 장부 미기재·거짓기재, 거래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 (2) 당해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6]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업주 또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 (가)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원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준 후 상호 서명 날인 후 확인서를 징구한다.
 - (나)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때에는 조사원이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원 2인 이상이 서명한 후 확인서를 징구한다.
 - 자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나. 증거자료 확보

- (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 확보한다.
- (2) 미표시 및 거짓표시 실태, 진열대 및 냉장고 등 위반 장소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한다.

다. 거짓표시·미표시 쇠고기에 대한 현지사정 또는 시정명령

- (1) 조사원 입회하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등 적발현장에서 현지시정이 끝난 경우는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날인으로 종결처리 한다.
 - *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는 “표시변경”, 미표시는 “표시이행” 명령
- (2) 적발현장에서 시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7] 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문서로 통보한다.
 - * 시정결과 보고 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 (3)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처분한다.

라. 조사결과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

- (1)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등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경우, 조사·처리를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한다.
- (2) 통보시 관련 업체를 명시하고 식육판매업자 조사 결과 및 DNA검사 결과 등을 첨부한다.

7.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법 제34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30	60	120	240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0	40	80	320

나. 과태료 부과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 (가) 이력제 표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8]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나)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한다.
- (다)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9] 서식의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2) 과태료 부과 결정

- (가) 지원장은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3) 과태료 처분 통지

- (가) 지원의 쇠고기 이력추적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한다.
- (나)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10]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11]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동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다) 지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록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11],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다. 과태료 징수 절차

- (1)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

8. 행정사항

가. 조사상황 등록

- (1) 조사원은 귀청 후 [별지 12] 서식에 따라 조사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 * 조사내역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 (2)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이력제조사일지, 과태료부과 , DNA 동일성검사 등과 관련한 내역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조사실적 보고

(1) 출장소장은 매분기 연간 누계실적을 익월 3일까지 [별지 13] 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본원장에게 보고한다.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입력은 익월 3일까지 입력 하고 마감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사실적은 본원 또는 지원에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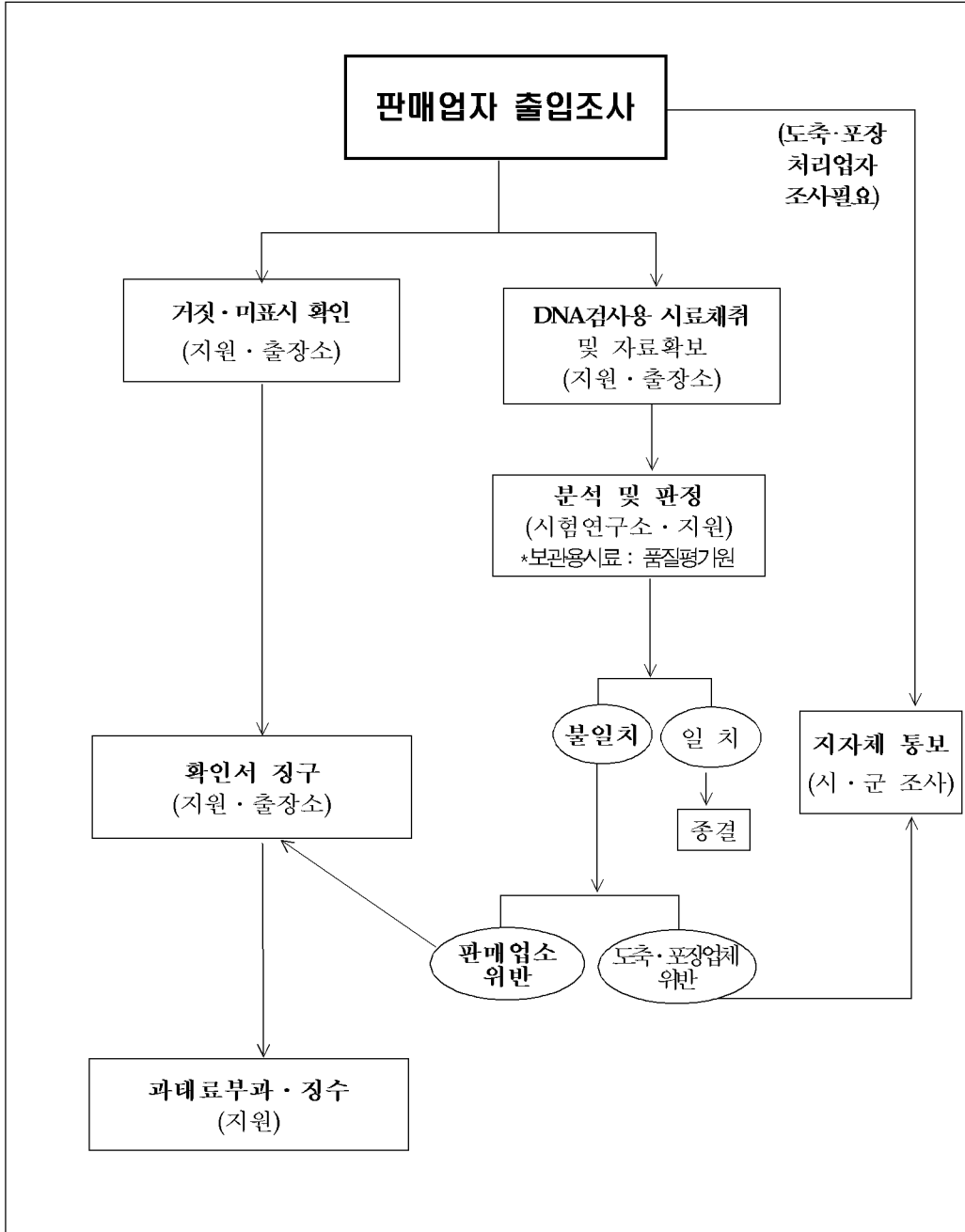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4월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1]

쇠고기 이력제 조사 절차(판매단계)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 취 현 황	개체식별번호 (육음번호)			쇠고기의 종류
				표시된 등급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 취 사유				
<p>「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체식별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쇠고기 시료를 채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육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육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mm×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개체식별번호	채취일	비 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 ○ 장 직 인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제 목 :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11조에 의거 DNA 동일성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사업장명	개체식별번호	검사일자	검사기관	판정결과

○ ○ ○ 장 직 인

210mm×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확 인 서					
업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개체식별번호		
	재고수량		시료채취량		
<p>위 업소의 업주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확인자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업주와의 관계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원	출장소	
	직 :	성 명 :		(서명)	
입회자(조사원)	소 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원	출장소	
	직 :	성 명 :		(서명)	

210mm×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7호 서식]

시 정 명 령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시정 명령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체 식별번호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하 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품목명 : 쇠고기

나. 위반내용 : 개체식별번호 미표시(또는 거짓표시 등)

다. 시정방법 : 즉시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또는 표시변경 등)

3. 시정 후 그 결과는 년 월 일까지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장 직인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문

문서번호 :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귀하의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 과태료부과 기관에 우편·전화(000-000-0000)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가. 당사자 주소·성명
 - 주 소 :
 - 성 명 :
- 나. 위반내용 :
- 다. 적용법령 :
- 라. 과태료 금액 :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과태료부과 관련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주소(지원 주소) :

전화번호 :

210mm×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조사기관

6. 처분내역 :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

쇠고기 이력제 조사일지

1. 조사일자 :

2. 조사자

직	성명	서명

3. 조사내역

상호명	업태	주소	대표자 성명	적발내용			현장조치 내용
				품목명	내용	수량 (kg)	

* 모든 조사업소를 기록하되, 미적발 업소는 적발내용 기재 생략

* 적발내역 : 확인서 참조(별첨)

210mm×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 조사 실시요령 (예규) [별지 제13호 서식]

쇠고기 이력제 조사실적(누계)

1. 조사실적 총괄

지원 (출장소)	조 사 연회수	조 사 연인원	조 사 연장소수	적발내역			처분내역			
				계	거짓, 미표시	장부 미기재 등	계 (A+B)	과태료 부과 (A)	과태료 부과금액	관계기 관통보 (B)
	회	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개소

* 관계기관 통보 : 도축포장업자를 적발하여 시청에 통보한 것

2. 세부 적발내역(과태료 부과 대상만 기재)

① 일련 번호	② 지 원	③ 출 장 소	④ 조 사 월일	⑤ 과태료 부과 월일	⑥ 시정 명령 월일	⑦ 시 도	⑧ 주 소	⑨ 성 명	⑩ 주민 등록 번호	⑪ 업 종	⑫ 상 호 명	⑬ 위반 유형	⑭ 종 목	⑮ 종 류	⑯ 품 목	⑰ 위반 물량 (kg)	⑱ 과태료 (천원)	⑲ 통 보 처

주) 작성요령

- ⑪ 업종 : 백화점, 할인매장, 슈퍼(편의점, 마트, 식품점 포함), 농축협, 식육점 등 쇠고기 판매업소
- ⑬ 위반유형 : 거짓표시, 미표시, 장부미기재, 명세서미교부, 시정명령위반, 조사거부 중 택1
- ⑭ 종목 : 일반, ⑮ 종류 : 육류, ⑯ 품목 : 쇠고기
- ⑰ 위반물량 : kg으로 기재(거짓표시, 미표시만 대상)
- ⑲ 통보처 : 과천시청 등 기관명 기재(관계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한 것)

3. DNA동일성검사 실적

지원 (출장소)	DNA검사 계획(연간)	DNA검사 신청	개체식별번호 검사결과			
			계	일치	불일치	검사중
	점	점	점	점	점	점

4. 개선·건의 사항

지원(소)별	제 목	주 요 내 용

210mm×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1. 목 적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소 또는 기존 소에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의 체계를 정하고 귀표의 수급관리를 위해 쇠고기 이력관리제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이력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
- 나.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다. “소유자 등”이라 함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됨
 - ① 소의 사육자
 - ② 생축장 등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공동사육시설의 관리자
 - ③ 한우개량, 유우개량 등 정부에서 인정한 종축개량기관
 - ④ 시험·연구기관
 - ⑤ 소의 사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등

- 라. “귀표”란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등으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인쇄형, 버튼형, 재부착용 귀표가 있음
- 마.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 시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
- 바.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 사. “위탁기관”이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소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귀표 부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아. 용어정의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의함.

3.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표시

가. 개체식별번호의 체계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의 권고안에 따르고, 국가코드는 ISO 3166에 따라 3자리 문자를 사용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 사육농가 및 전산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포함하여 15자리로 구성하고, 국가 내에서 고유의 번호를 사용하며, 12자리는 숫자로 표시한다.

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 이 법 시행 전의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처음부터 다시 일련번호 부여한다.
 -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련번호 8자리를 표시하고 마지막 숫자는 체크번호로 구성한다.
- 이 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하여 법 시행당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 수입소는 수출국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국가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KOR	0	0	0	8자리(종전 식별코드)								ck
	0	0	1	8자리(등록번호)								ck
	0	0	2	8자리(신규 식별코드)								ck
국가코드	확장코드		코드 구분	일련번호								체크번호

※ 예시

- 종전 식별코드(123456784) 적용 소 : KOR 00 0 123456784
- 등록번호(123456784) 적용 소 : KOR 00 1 123456784
 - * 등록번호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위해 부여
- 신규 식별코드(000012348) 적용 소 : KOR 00 2 000012348
- 호주에서 수입한 소(123456789012) : AUS 123456789012

4. 귀표 구매 및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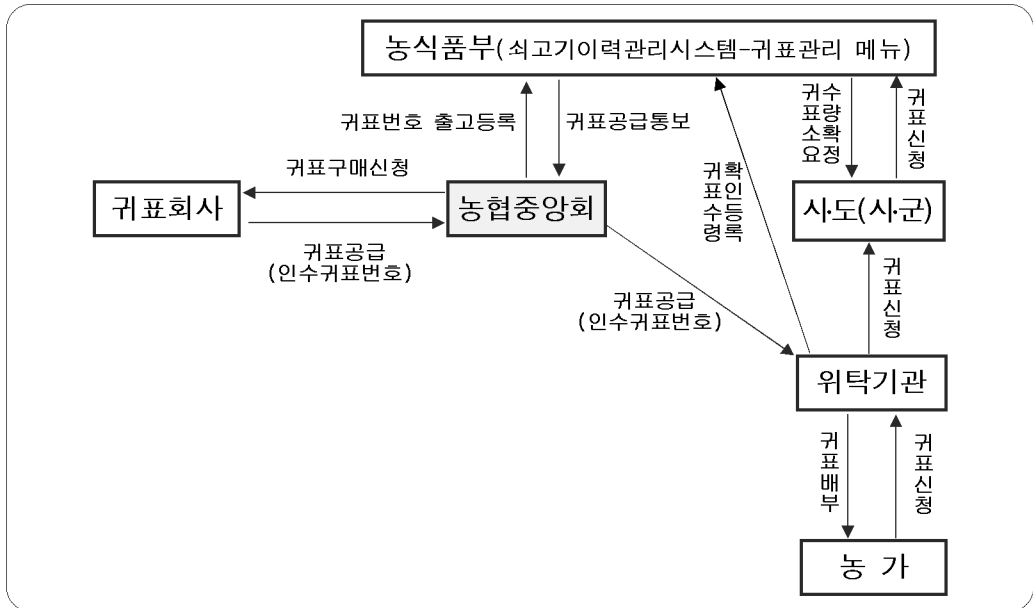
가. 귀표의 구매

- 귀표는 귀표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구매 공급한다.
- 각 시·도는 관내 사육규모 및 귀표 부착두수,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귀표 소요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급하도록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 구매절차
 - 농협중앙회에서 구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구매수량, 구매일정, 구매규격, 품질평가기준 등
 - 귀표 규격, 품질 평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귀표품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나. 귀표의 배부

-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가 신청한 내역에 따라 위탁기관에 배부하고, 배부내역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전산 등록한다.
- 귀표를 수령한 위탁기관은 귀표수량 및 귀표번호를 확인,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또는 귀표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수령확인’ 전산등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귀표수불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귀표 배부 체계도>



5. 귀표의 관리

가. 귀표 재고관리

- 농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귀표는 위탁기관의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자 지정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귀표의 폐기 사유(구제역 등)가 발생한 경우 사진첨부 및 책임자 결재 후 소각 처리 원칙
 - 폐사 또는 탈락된 개체의 귀표는 위변조 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하여 소각처리
 - ※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회수조치 예외
 - 당해 연도에 회수한 귀표는 보관하였다가 익년 6월1일 이후 폐기

나. 귀표 수불관리 및 재고조사

- 귀표 수불관리는 귀표번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귀표를 인수하거나 출고할 경우는 반드시 「귀표수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재고조사
 - 매월 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귀표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매분기 최종 월 재고조사 결과는 귀표관리 책임자의 차 상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 의한 수불관리 출력물과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한다.

6. 귀표의 부착

가. 귀표 부착대상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가 해당되며, 다만, 관련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본 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소의 종류 구분 기준

- 한우 :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수입소 :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나. 귀표의 부착방법

-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한다.(1두 2조 부착)

-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 일반 인쇄형 귀표, 좌측에 단추형 귀표를 부착한다
 -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한다.
 -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C.I 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한다.(항상 2조 유지, 단추형 탈락 후는 모두 인쇄형을 부착)
- ※ 귀표부착 오류사례
- 좌측 귀(인쇄형), 우측 귀(단추형)를 좌 - 우를 바꾸어 부착
 - 인쇄형과 단추형의 암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
 - 1두 2조를 부착하지 않고, 인쇄형 귀표만 부착(단추형 미부착)

다. 귀표부착 의무자

- 소의 소유자 등은 송아지 출생 또는 기존 소 신고에 의하여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기한 내에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 위탁기관은 농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동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를 가지고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 후 신고 된 소 및 사육자 관련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전산등록사항 :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소의 개체 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등
- 귀표부착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단체, 인공수정사, 사료회사 대리점 등에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는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귀표의 재부착

- 귀표 재부착 요령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 발생 시 위탁기관에 신고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귀표의 재부착 및 전산등록
 - 재부착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부착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귀표 훼손·탈락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탈락된 귀표를 반드시 회수하여 탈락된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재부착된 귀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관리번호에 의해 전산 입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표 수불관리대장

(단위 : 조)

월일	수 령			배 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농가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이월								
누계(월계)								

※ 기재요령

1. 연월일 :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한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귀표번호를 처음~끝번호 기재한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기입
3. 수령자(농가명) : 대행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는 소의 소유자 등을 기재하고, 자가 부착한 소유자 등은 해당 소유자명을 기재한다.
4. 재고량 : 현재고량(직전재고량+인수량-출고수량)을 기재한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8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가. 목적

- '08.12.22.부터 시행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부착하고 있는 귀표의 관리요령을 명확하게 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체관리의 정확도 제고

나. 재부착용 귀표 부착 및 관리요령

- 1마리 소에 1조(일반형, 단추형)의 귀표 부착이 원칙, 즉 1마리의 소에는 반드시 1개의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1마리의 소에 부착된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의 탈락 시 조치요령
 - 일반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단추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추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일반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일반형 귀표와 단추형 귀표가 모두 탈락된 경우
 - 위탁기관을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의 귀에 각각 재부착용 귀표를 모두 부착하고 관리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기관이 아닌 방역사 등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6자리)를 지역 위탁기관에 통보

- 농가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는 확인이 되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농가와 위탁기관을 통해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귀표를 부착한 위탁기관 등에서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해당 사실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하고, 새로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귀표부착을 위해 농가 방문 시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 위탁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사육단계 개체식별번호 관리의 정확도 제고
-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탈락된 귀표는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소각

다. 재부착용 귀표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



- 재부착용 귀표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등록요령 : 붙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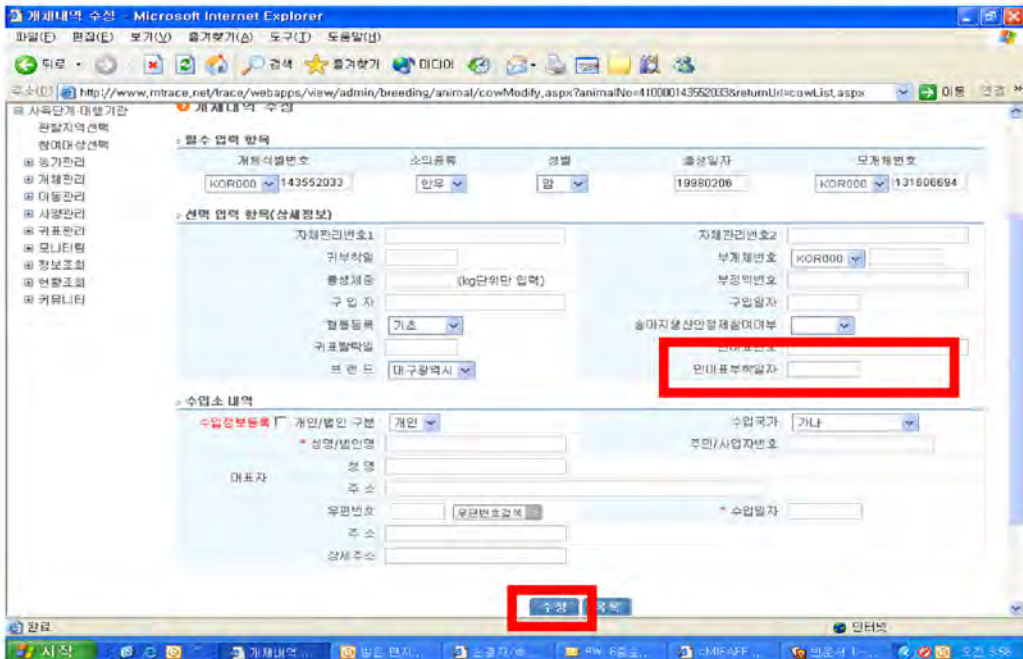
1.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단계/개체관리/개체등록 화면에서 해당 농장주를 조회·선택한다.



2.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의 내역이 조회되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소를 선택하여 수정버튼을 선택한다.



3. 재부착용 귀표(민이표)와 부착일을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선택한다.



9 사육농가 귀표 자가부착 방안

가. 개요

□ 도입목적

- 육우 등 초유떼기 거래 시 즉시 귀표 부착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대행기관에서 귀표 부착에 따른 소의 스트레스·부상 사고 등 민원
발생 사전 방지
 - 특히 젖소의 경우 귀표 부착으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산 등 유발 가능
성이 높아 자가 부착의견이 관련 협회 등에서 제기
- 사육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귀표를 부착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전산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규모화 된 농가를 중심으로 자가 부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사업 조기 정착

□ 근거규정

- 소의 소유자 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 후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아 해당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시행 시기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12.22.부터 시행

나. 시행방안

□ 기본계획

- 소 50두 이상 농가와 젖소 농가 등 규모화 된 농가를 중심으로 귀표 자가
부착 등을 2013년까지 확대(소사육두수의 50%)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은 고취하되 관리감독은 강화

□ 사업추진 방향

- 자가부착 농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장이 **관할 시·
도에 신청하여 지정토록** 관리방식 개선

- 위탁기관에서는 귀표 자가부착 희망 농가를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 시·도는 적격 여부를 검토, 위탁기관에 지정 통보하고 사전교육 및 지도 감독
- 위탁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자가 부착 농가를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농가는 제외하고 시·도에 지정신청
 - * 소 거래과정에서 악용할 개연성이 높은 소 중간상인은 지정 제외
 - * 귀표 1회 배부량은 10~20개로 제한 이력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가부착농 귀표전산관리
- 젓소농가의 육우 초유떼기 귀표부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젓소검정사업기관의 위탁기관업무 보조수행(농가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여부 확인) 검토
 -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귀표 부착기를 농가당 1개 무상 배부

□ 관리방법

- 위탁기관은 자가 부착농가로 지정한 사육농가로부터 ① 송아지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② 출생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③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부착 여부, 개체식별번호 등 이력관리시스템 입력 정보 6개 항목을 확인(특히 여러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출생 시 개체식별 정보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 ④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기록·관리
- 위탁기관은 귀표수불대장에 지정된 자가 부착 농가별로 귀표 수불 내역을 기록·관리
-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농가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육농가에 미리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귀표 배부 및 회수 내역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귀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다. 행정사항

- 예산 관련 : 농가에서 자가 부착한 경우, 위탁기관의 귀표부착비는 부착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만 지급

10 한우 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I. 한 우

1. 종축등록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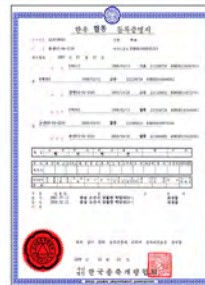
가. 기초등록우 : 선대의 혈통을 알 수 없는 소로서 생후 6개월 이상에서 외모를 심사하여 기초등록이 된 소

기
초
등
록
우



나. 혈통등록우 : 등록우 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의하여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

혈
통
등
록
우



다. 고등등록우 :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

고 등 등록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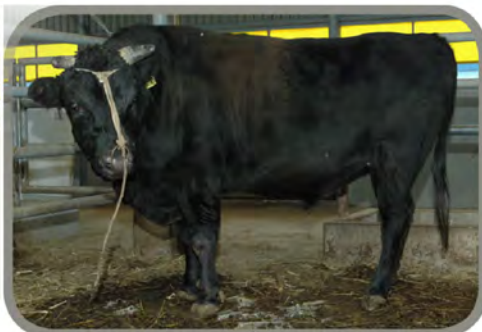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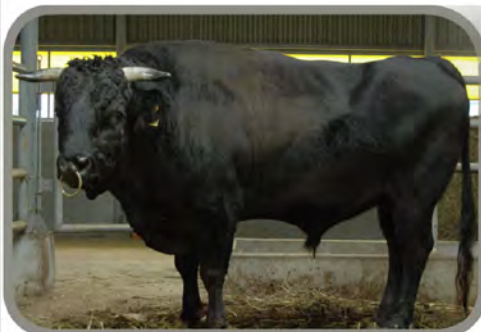
라. 예비등록우 : 외모로 보아 한우라고 인정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한우

예 비 등록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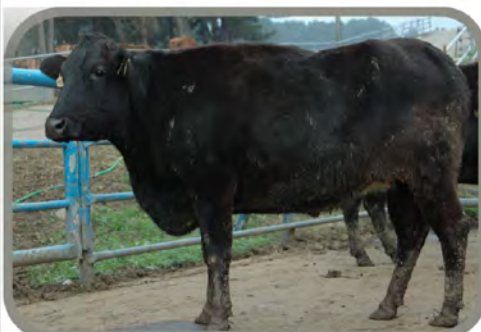


- 마. 제주흑우 :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체 또는 태어난 소
 ○ 피모색은 거의 흑색을 띠며 제주도에 약 500여두가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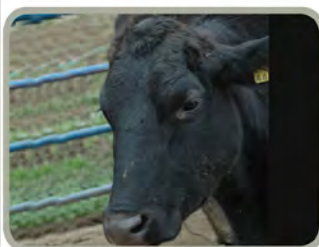
제주흑우수소



제주흑우암소



제주흑우 특징



2. 외모기준에 따른 한우의 구분

가.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뺨·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한국재래우

한우수소



한우암소



한우거세우



한우송아지



나. 칩한우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의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1) 송아지 외모기준 : 세로줄 무늬가 몸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 칩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칩한우송아지



2) 성우 외모기준 : 부·모 모두 칩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소

칩한우수소



칩한우암소



3. 종축등록은 불가능하지만 한우로는 인정할 수 있는 개체

가.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고 백모가 있으나 발현정도가 경미하며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경우는 한우인정

1) 이마속모: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가 몇 가닥씩 산재하여 발현한 경우



2) 면백 :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 또는 백반이 발현한 경우



3) 백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백반(모)가 발현한 경우



4)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나.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 또는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발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하여 친자가 확인된 경우는 한우인정

1) 귓속흑모 : 개체의 귓속에 흑모가 밀집하여 발현한 경우



2) 입주위(구순)흑모 : 개체의 입주위(구순)에 흑모가 발현한 경우



3) 흑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흑반(모)가 발현한 경우



4) 흑반점 또는 흑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다. 흑비경우

- 비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검은색을 띠
- 흑비경우는 한우로만 인정하고 종축등록은 불가능하며 흑비경의 4단계 이상에서는 개체의 특정부위에 이모색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음.

흑비경한우



○ 흑비경 6단계

흑비경



비경에 흑반점이 몇 개 보임



비경의 주위에 흑반점이 넓게 퍼짐



비경에 전체적으로 흑반점이 넓게 퍼짐

6 단계



비경에 흑반점이 전체적으로 퍼짐



흑반점이 비경주위 부분까지 퍼짐



비경이 전체가 진한검은색임

○ 주요특징

부 위	부위별 특징
비 경(코)	- 비경(코)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회색 또는 흑색이 나타나며 정도에 따라 흑비경과 동반하여 눈주위에 검은모색이 발현됨
모 색 발굽·뿔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II. 한우가 아닌 개체

1. 외국의 대표적인 육우품종

가. 한우와 모색이 동일한 외국품종

○ 일본의 갈모화우

일본의

갈모화우



○ 일본의 단각종

일본 단각종



○ 사우스 데본(South Devon, 원산지 : 영국)

사
우
스
데
본



○ 겔비에(Gelbvieh, 원산지 : 독일)

겔
비
에



○ 리무진(Limousin, 원산지 : 유럽)

리
무
진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 원산지 : 미국)

산
타
거
트
루
디
스



○ 레드 앵거스(Red Angus, 원산지 : 유럽)

레드 앵거스



레드앵거스(수소)



레드앵거스(수소)



레드앵거스(암소)



레드앵거스(암소)

○ 중국 연변우(황우)

중국 황우 (연변우)



중국 연변우(암소)



중국 연변우(암소)



중국 황우(암소)

인터넷 발췌



인터넷 발췌

중국 황우(송아지)

나. 외국육우품종과 국내에 현존하는 교잡우 외모비교

구분	육우품종(외국)	교잡우(국내)
헤어포드	 <p>헤어포드(암소)</p>	 <p>헤어포드 교잡우</p>
심멘탈	 <p>심멘탈(암소)</p>	 <p>심멘탈 교잡우</p>
앵거스	 <p>앵거스(암소)</p>	 <p>앵거스 교잡우</p>
샤로레	 <p>샤로레(암소)</p>	 <p>샤로레 교잡우</p>
브라만	 <p>브라만(암소)</p>	 <p>브라만 교잡우</p>

2. 이모색 발현우(한우로 인정이 불가한 개체)

가.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점의 크기가 10cm이상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백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1) 이마백반



2) 몸통부위 백반



3) 발목·꼬리채 및 유기부위 백반(모)



4) 부분백모 및 전신백모



나.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점의 크기가 비대하게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흑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홀스타인 교잡우)

1) 머리·목부위 흑반점



2) 몸통부위 흑반점



3) 꼬리채 및 유기부위 흑반(모) : 이모색 반점과 동반하여 발현할 경우 인정불가



4) 전신 검은색 피모



III. 교잡우 및 육우의 구별요령

- 한가지 특징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해당개체의 외모에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한우인지 교잡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1. 교잡우의 대표적 특징

가. 피모색(전신티모)



나. 두상(머리)



다. 뿔의 형태



라. 귀의 형태



마. 흉수(가슴느러미, 목느러미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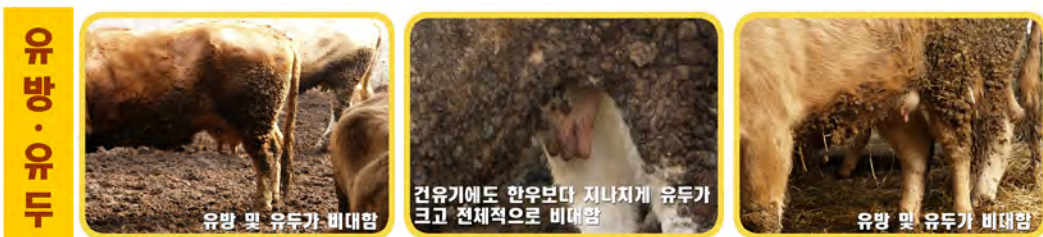
바. 넓적다리 및 둔부(엉덩이)



사. 정강이 및 다리굵기



아. 유방 및 유두



2. 교잡우의 발생 사례 및 혈연관계

가. 대표적인 교잡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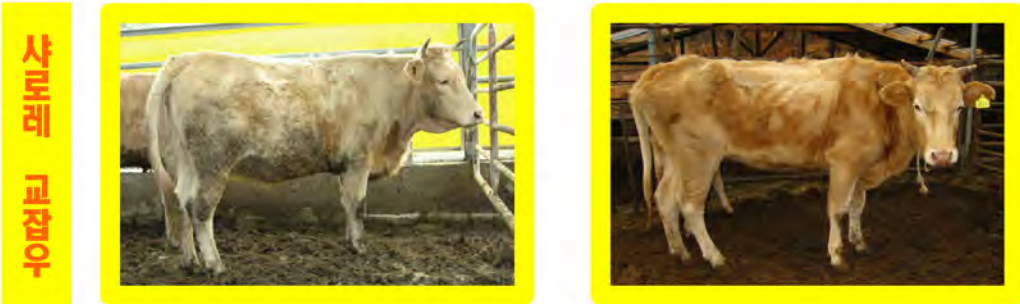
1) 홀스타인×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개체의 얼굴 또는 이마에 큰 백반점이 발현 · 개체의 전체적인 피모색은 흑색 또는 흑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목 및 꼬리채에 백반점 및 백모가 발현 · 개체의 몸통에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 밑부위 및 배 밑부위에 뚜렷한 백반점이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 주위 및 전체에 뚜렷한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 · 유두의 색깔이 흑색 또는 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경 및 비경주위 전체가 흑색 · 입주위 전체가 흑색으로 발현

2) 샤로레 × 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모색이 한우의 황갈색과 샤로레 흰색의 중간색 · 대부분 연황색 또는 연한 은황색 · 은갈색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보다 귀와 주둥이 그리고 콧잔등이 크고 입주위와 눈주위가 지나치게 희다. · 얼굴의 품위에서 한우보다 사나워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수소(♂)에 의해 생산된 교잡된 송아지도 피모색은 연황색 또는 은황색이며 한우와 피모색이 구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밑부위 및 다리 안쪽부위의 모색이 한우보다 유난히 희고 밝은 연황색임. ·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로레의 특징인 경봉(목)과 엉덩이 부위가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후구가 한우보다 발달

3) 심멘탈·헤어포드×한우 교잡우

심멘탈·헤어포드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멘탈·헤어포드의 특징에 의하여 전신 또는 특정 부위에 백반점 또는 백모가 뚜렷하게 나타남 ·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백반점(백모)가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색유전력이 강하여 후대축에게도 부모의 피모색 및 형태를 물려주므로 한우로 종부를 시켜도 특징적인 외모 형태는 계속적으로 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각종(Polled) 형질에 의하여 뿔이 나지 않는 개체가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며 가슴·배·유방 밑부위 및 정강이 그리고 꼬리부위에도 백반점 또는 백모가 다수 발현 ·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우품종의 체형이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한우보다 체형이 크고 발달하였음

나. 혈연관계로 본 교잡형태 및 외모적 특징

○ 교잡우 형태 A형



【혈연정보】

레드브라만(♀) × 한우(♂)

↓

F1(♀) × 레드브라만(♂)

↓

F2(♀) × 산타(♂)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가장 큰 특징으로 큰귀가 하향으로 처진 것을 볼 수 있음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와 레드브라만(Red Brahman)의 모색을 이어 받아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적갈색의 피모와 동시에 눈과 입주위의 피부색 또한 선홍색을 보임

○ 교잡우 형태 B형



【혈연정보】

브라만(♀) × 한우(♂)

↓

F1(♀) × 홀스타인(♂)

↓

F2(♀) × 샤로레(♂)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대표적인 육우품종인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엉덩이(둔부)부분이 매우 발달하였고 살 붙임 또한 한우보다 많음

○ 교잡우 형태 C형



【혈연정보】

한우(우) × 브라만(송)

↓

F1(♀) × 샤로레(송)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후구가 발달하였고 엉덩이(둔부)부분이 한우보다 발달하였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너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교잡우 형태 D형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Brahman)의 계통으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교잡우 형태 E형

	<p>【혈연정보】</p> <p>한우(♀) × 브라만(♂)</p> <p>↓</p> <p>F1(♀) × 심멘탈(♂)</p> <p>↓</p> <p>해당개체(♀)</p>
---	---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밀으로 쳐져 있음
- 심멘탈(Simmental)의 영향으로 머리 및 배 밑에 흰색 반문이 있으며 피모색도 적갈색을 보임

○ 교잡우 형태 F형



【혈연정보】

한우(♀) × 브라만(♂)

↓

F1(♀) × 샤로레(♂)

↓

F2(♀) × 한우(♂)

↓

해당개체(♀)

- 주요특징




F3(♂)의 아버소(한우)



F3(♂)로서 해당개체의 아들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샤로레이(Charolais)의 모색을 유전받아 피모색이 연황색 또는 은갈색
- 브라만(Brahman)의 특징으로 한우보다 귀가 크고 하향으로 처짐

○ 교잡우 형태 G형

	<p>【혈연정보】</p> <p>레드브라만(♂) × 한우(♀)</p> <p>↓</p> <p>F1(♀) × 산타(♂)</p> <p>↓</p> <p>해당개체(♀)</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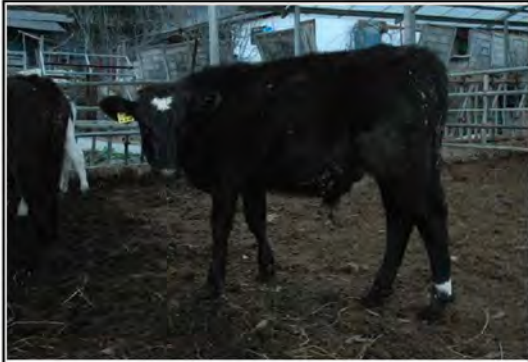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Red Brahman)과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의 교잡우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컷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사진과 같이 음부가 한우에 비해 크고 후구가 발달
- 레드 브라만(Red 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가슴 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다.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홀스타인 교잡우



한우×샤로레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한우×샤로레×홀스타인 교잡우



한우×브라만×헤어포드교잡 교잡우



한우×샤로레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브라만×산타 교잡우



한우×회색브라만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브라만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샤로레 교잡우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브라만 교잡우

다. 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사례(일본의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브라운스위스×홀스타인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한우 기준 설정

구분	구분 기준	표시
종 축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한우(종축등록)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제주 흑우(종축) 제주 흑우
한 우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 (이마백반, 가슴백반 등) -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미한 흑모와 흑반우 -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 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한우(비경흑) 한우(면백) 한우(흑반) 한우(귀속흑모) 한우(가슴백반) 등으로 특징을 구분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한우(이마속모) " (전신속모)
	○ 칩한우(칩소)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부·모 모두 칩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 부·모 모두 칩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 -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 일반한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 갈색), 적갈색(붉은 갈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옅은 색을 나타냄 - 귀·눈주위·비경(코)근처에 흑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을 나타내기도 함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이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 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살(肉)색이나 흑색, 회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치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점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 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제주흑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 모색은 50%가 검은색, 40% 흑갈색, 10%가 황색으로 발현됨 - 눈, 비경, 꼬리와 발굽은 검다가 생후 5개월령에 흑우의 모색으로 발현됨 - 복부 및 유방주위에 백반이 나타나는 개체가 있음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뺨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이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 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이나 후향 및 하향각등 골고루 나타남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흑색이나 살(肉)색이나 회색도 나타남 - 제주 흑우의 경우 내륙흑우와 달리 비경주위에 흰테두리가 없음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점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좁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흑색임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쇠한우(쇠소)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 줄무늬가 몸 전체에 있음 - 모색은 주로 호반무늬:흑색:황색비율이 3:3:4의 비율로 나타나며 황만선도 보임 - 모색이 검더라도 귓속과 뿔과 뿔 사이의 모색이 황색으로 발현됨
체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종(뺨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 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가 있으며, 비경주위는 흰 테두리를 보임
머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치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점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각과 좌골사이에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1. 목적과 정의 / 263
2. 소 사육단계 / 265
3. 소 도축단계 / 283
4.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 294
5. 쇠고기 판매단계 / 303
6. DNA 동일성 검사 / 313
7. 위반자 처분 / 319
8. 기타사례 / 323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1

목적과 정의



질의 1. 쇠고기 이력제는 왜 하는지?

답변요지

-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쇠고기의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함. EU('86), 일본('01), 미국('03) 등의 BSE발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 국민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07.12.21.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이력제를 추진하게 됨. 우선 1단계로 '08.12.22.부터 소 사육단계에 이력제를 시행해 왔고, 2단계로 '09. 6.22.부터 쇠고기 유통단계(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확대하여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하게 됨.



질의 2. 쇠고기 이력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또한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게 됨.

질의 3. 쇠고기 이력제의 적용 대상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적용대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와 개체식별대장(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육으로 제공되는 것(지육, 정육, 포장육)이 해당되며 머리, 꼬리, 족, 사골, 잡뼈, 내장, 간, 염통, 허파, 지라, 콩팥, 우낭, 혈, 원피, 지방, 도가니, 스킨 등 부산물은 제외 됨.

질의 4. 쇠고기 이력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는 4단계로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력을 관리함. 사육단계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하고 도축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함. 포장처리단계에서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장에서는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소 사육단계



질의 1. 소 사육농가 등이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요지

- 법 제4조에 따르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사육하고 있는 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소를 수입한 경우,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소가 폐사한 경우 반드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함('11.6.22부터 적용).

※ 「개체식별대장」이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력시스템을 지칭함



질의 2. 농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도 소 출생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유자 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소의 운송 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로 정의된 바, 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도 송아지가 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생축장 등에서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공동사육시설의 관리자, 한우개량·유우개량 등 정부에서 인정한 종축개량기관, 시험·연구기관, 소의 사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등도 소의 소유자 등에 해당됨.



질의 3. 기르고 있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4조에 따른 소의 소유자 등의 소 출생 등 신고방법은 관할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소의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참고로 위탁기관이란 소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

의 부여 및 귀표부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군별로 지역축협 등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질의 4. 쇠고기 이력제에서 구분하는 소의 종류는?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에서 구분하는 소의 종류는 한우(한우 기준에 부합하는 소), 육우(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수컷, 기타 육용 소), 젖소(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유용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수입소(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가 있음.



질의 5. 젖소가 암송아지를 낳은 경우 육우(젖소미경산)로 등록할지? 아니면 젖소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젖소가 낳은 수송아지는 육우로 분류되지만 젖소가 낳은 암송아지는 통상 도축 출하되는 시점에 따라 육우 또는 젖소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사육농가의 경영형편 또는 당해 소의 생육상태에 따라 젖소 후보로 기르다가 육우로 전환하거나 육우로 분류하여 사육하다가도 젖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젖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시 소의 종류 구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젖소가 암송아지를 낳으면 젖소, 수송아지를 낳으면 육우로 우선 등록하여야 함. 추후 등록된 소의 용도가 바뀌어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변경하여야 함. 특히 젖소로 등록된 미경산우를 도축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조치하여 도축장에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질의 6. 「개체식별대장」에는 「소의 출생등 신고서」의 신고일과 전신등록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신고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답변요지

- 「소의 출생 등 신고서」가 위탁기관에 접수된 날이 신고일로 인정되며, 전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당일을 신고일로 인정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을 신고일로 함.



질의 7. 수입한 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답변요지

- 수입업자가 통관절차와 「개체식별대장」 등록이 완료되어 귀표를 부착한 후에 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법 제4조에 의하여 사육지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11.6.22부터 적용’)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서의 양도·양수 구분 란에는 양도로 표시하고 양도 연월일 및 장소,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양수자 성명(상호),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양수자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참고로 수입 소를 양수받은 사육농가 등은 관할 지역의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에 의하여 구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신고(‘11.6.22부터 적용’)를 하여야 함.



질의 8. 위탁기관에서 전화로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 반드시 신고서에 신고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요지

- 위탁기관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전화, 구술 등으로 받은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신고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기한 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직원의 대리 날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서를 보관하여야 함. 특히 소의 출생신고, 양도·양수, 폐사 등의 신고서 접수 여부, 접수일, 신고내용 등은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고접수 절차이므로 위탁기관은 반드시 건별로 신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질의 9. 소의 출생 등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요지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의 만료일을 그 익일로 정함. 다만 소의 수입·수출신고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즉시 하여야 함.



질의 10. 위탁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 위탁기관의 지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관리,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소의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및 관리, 귀표의 수령·배부 및 귀표의 부착 지원, 소의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사항의 확인,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최고기 이력제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질의 11. 위탁기관에서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시 처리방법은?

답변요지

- 소를 출하한 사육농가로부터 양도신고를 접수한 위탁기관은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양도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에 신고인의 서명을 받고(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관리책임자 서명 가능) 「개체식별대장」에 접속하여 양도 처리하면 됨. 이때 당해 소를 양수한 사육 농가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확인한 후에 「개체식별대장」에 접속하여 양수 처리하여야 함. 물론 이 경우 위탁기관은 양수자가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양수신고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서명을 받아야 함(위탁기관의 대리작성 가능). 이와 달리 「개체식별대장」에 양도 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개체의 양수신고를 접수한 위탁기관은 신고서를 정리하여 사육농가의 서명을 받고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에 「개체식별대장」에 접속하여 양수 처리하면 됨. 이 경우 양도자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은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양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질의 12. 위탁기관에서 소 출생신고 접수시 처리 방법은?

답변요지

- 사육농가 등으로부터 소 출생신고를 접수한 위탁기관은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농가에 알려주고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에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당해 소에 귀

표를 부착하면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사육농가의 서명(전화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만 해당)을 받아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법 시행으로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거래가 금지되므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 출생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접수와 동시(전화 등)에 「개체식별대장」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면서 개체식별번호를 농가에 통보하고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할 수 있음.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일정 등은 사육농가의 소 출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육우 초유떼기는 통상 출생 후 5~7일 만에 거래됨을 고려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귀표를 부착(7일 이내)하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특히 육우 초유떼기는 거래 후 질병 등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우 사육농가에서 폐사 및 양도·양수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질의 13. 귀표 자가부착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업무위탁기관에는 귀표부착비와 이력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중 귀표부착비는 소에 귀표를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임. 귀표는 위탁기관이 직접 부착하는 경우와 농가에서 부착하고 위탁기관에서 확인·등록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이 달라 정부에서도 비용을 차등 지원하므로 위탁기관에서는 반드시 별도 관리하여야 함.



질의 14. 사육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소의 소유자 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의 출생 등의 신고 후에 위탁기관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아 해당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나, 정부에서는 고령농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귀표부착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육우 등 초유떼기 거래시 즉시 귀표부착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위탁기관에서 귀표부착에 따른 소의 스트레스, 부상사고 등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육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귀표를 부착하여 활용한 경험이 많거나 전산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규모화 된 농가 중에서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귀표 자가부착 농가를 시·도에 지정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위탁기관에 지정 통


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자가 부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위탁기관에 신청하고, 위탁기관에서는 농가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시·도에서는 적격여부를 검토 후 지정하게 됨.

이 경우에 한하여 농가에서 귀표를 부착 할 수 있지만 위탁기관에서 자가 부착농가에 귀표를 사전에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최소량의 배부는 가능), 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여 귀표를 부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접수받아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하고 귀표를 필요수량만큼만 배부하여야 함.

또한 위탁기관에서는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는 당해 소를 거래해서는 아니 됨. 통상 귀표 자가부착 농가는 한육우 5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또는 젖소 사육농가에 한하여 위탁기관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질의 15. 귀표 자가부착 농가의 관리방법은?**

 **답변요지**

- 위탁기관은 자가 부착농가로 지정된 사육농가로부터 소의 출생 신고를 받은 후에 출생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농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 입력정보 6개 항목(특히 여러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출생시 개체식별 정보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을 확인 한 후에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위탁기관은 귀표수불대장에 지정된 자가 부착 농가별로 귀표수불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귀표부착비가 위탁기관에서 직접 부착한 경우와 차등이 있으므로 「개체식별대장」에 당해 개체를 등록시 자가부착 개체임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참고로 귀표는 위탁기관에서만 보관·관리하고 농가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육농가에 최소량의 귀표를 미리 배부할 수는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음.

이 경우 배부수량은 최소량으로 하여야 하며 농가배부 및 회수내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부된 귀표를 악용하여 소를 둔갑 출하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기관이 책임관리 하여야 함.

**질의 16. 귀표를 자가부착하는 농가에 귀표부착비를 지급하는지?****답변요지**

- 귀표부착비는 사육농가의 귀표부착을 지원하는 위탁기관에만 지급되며, 위탁기관에서 자가 부착 농가에게 귀표부착에 필요한 부착기 1개를 무상 배부할 수 있음

**질의 17. 위탁기관에서 사료회사 등에 귀표부착을 위탁할 수 있는지?****답변요지**

- 소 출생 등의 신고접수,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축산관련 법인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음. 이렇게 지정된 위탁기관에서만 귀표부착을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에서 임의로 사료회사 직원, 인공수정사, 공수의사 등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 됨. 다만 위탁기관의 경영형편상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일용잡급 등을 고용하여 귀표부착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규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귀표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시 말해 정규직원과 일용잡급 등이 2인 1조가 되어 책임 관리하여야 함.

**질의 18. 귀표란 무엇인지?****답변요지**

- “귀표”란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등을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로 일반형, 단추형, 재부착용 귀표가 있음. 이중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이며, 일반형 또는 단추형 귀표 탈락시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다시 부착하는 귀표를 말함.



질의 19. 최고기 이력제에서 부착하고 있는 귀표는 어떤 것인지?

답변요지

- 최고기 이력제에서 부착하고 있는 귀표는 문자(KOR), 식별코드(12자리), 바코드 및 농림사업 엠블럼 등이 기재된 것임. 다만, 기존 축산정책사업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배부하는 구형귀표(9자리)는 기존 소에 이미 부착된 것만 인정하나, 전산 등록할 경우는 앞에 000(숫자로 기재)을 넣어 총 12자리를 등록하여야 함.



질의 20. 귀표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요지

- 최고기 이력제에서 사용하는 귀표는 그 규격과 모양 등을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관련 별표4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모양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질의 21. 법 시행이후에도 브루셀라병 검사기관의 귀표부착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최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가축개량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 소 브루셀라병 방역, 가축공제 등 각 사업별로 귀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왔으나, '08. 12.22부터 「소 및 최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소의 귀표를 전담하여 부착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그동안 소 브루셀라병 방역기관에서 소 귀표부착두수의 약 30%를 담당하여 왔는데, 법 시행으로 가축방역기관에서 귀표부착을 중단할 경우에 이력제 시행초기 위탁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귀표 미부착소의 다수 발생이 우려되어, 소 브루셀라병 검사신청 농가의 편의, 위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09. 6.22 유통단계 이력제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축방역기관에서 귀표부착을 협조함.

따라서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제 시행이후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하면 그 귀표를 활용하여 타 정책사업이 이루어짐.



질의 22. 귀표를 부착해야하는 의무 이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요지

- 법 제5조에 의하여 소의 소유자 등이 귀표를 부착해야함. 다만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귀표부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기한 내에 사육농가 등이 신고하도록 하고 귀표부착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소의 소유자 등은 송아지가 출생하거나 귀표가 탈락된 경우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질의 23. 귀표는 어떻게 부착하는지?

답변요지

- 귀표는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소의 양쪽 귀(1두 2개)에 부착하며,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일반형(인쇄형) 귀표를, 좌측에는 단추형 귀표를 부착함.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하며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됨.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림사업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지워지지 않는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함.



질의 24.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소는 한우로 한정되어 있는지?

답변요지

- 법 제2조에 따르면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의 출생등 신고서에 소의 종류를 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등으로 세분함. 따라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이며 한우, 육우, 젃소, 수입 소 등이 포함됨.



질의 25. 귀표부착 오류사례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요지

- 귀표부착의 오류사례는 소의 좌측 귀에 일반형, 우측 귀에 단추형 귀표로 바꾸어 부착된 경우, 일반형과 단추형의 압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하는 경우, 1두 2개를 부착하지 않고 일반형 귀표만 부착(단추형 미부착)하는 경우 등이 있음.



질의 26. 소의 귀에 한 개의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다른 쪽 귀에 귀표를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귀표는 부당한 사용의 방지, 탈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 왼쪽 귀에 단추형을 부착함. 부착된 귀표가 탈락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표가 탈락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게 됨.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탈락된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사육농가는 탈락된 귀표를 잘 보관하여 위탁기관의 직원 방문시 제시하여야 함. 또한 이력제가 시행되기 전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 종축개량사업 등에서 부착한 귀표는 소 한 마리에 한 개의 귀표만 부착된 경우가 있으므로 탈락에 대비하여 미리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반드시 재부착용 귀표를 나머지 한쪽 귀에 부착하여야 함. 도축장에서는 한쪽 귀에만 귀표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면 도축이 가능하지만, 소의 신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 귀표가 탈락되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도축을 할 수 없으므로 항상 양쪽 귀에 한 개씩, 모두 2개의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7.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요지

- 귀표부착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소의 귀에 질환이 걸려있거나 외상 등으로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할 수 있음.



질의 28.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귀표부착의 예외 사항은 어떤 경우인지?

답변요지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를 말함.



질의 29.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반드시 소의 귀에만 부착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4조에 따라 출생 및 수입신고 된 소에 대하여 통보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소유자 등은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여야 함. 다만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거나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부착의 예외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절차를 거쳐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당초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질의 30. 사육농가로부터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답변요지

- 시·군별로 지정된 위탁기관에서는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아 30일(육우의 경우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할 수 있음. 또한 수입된 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귀표를 부착하면 됨. 아울러 귀표의 재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내에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2주일 이내에 관리번호가 표시된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관련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최고기 이력제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 31. 소 브루셀라병검사시 귀표를 부착한 소에게 이력제 귀표를 다시 부착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최고기 이력제 법 시행당시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는 최고기 이력제 법이 적용되는 2008.12.22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부착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 다만 이러한 소의 일부가 최고기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전산 등록하여야 거래나 도축이 가능함.



질의 32. 위탁기관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소에 달아줄 경우에 주의할 점은?

답변요지

- 위탁기관에서는 사육중인 소에 부착한 귀표가 탈락한 경우에 당해 소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일반형 또는 단추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재부착용 귀표에 잘 지워지지 않는 펜을 이용하여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한 후에 귀표가 탈락된 소의 귀에 다시 부착하여야 함. 귀표를 부착한 후에는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6자리의 관리번호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도축할 수 있으므로 위탁기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함. 또한 탈락된 귀표는 반드시 회수하여 탈락된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귀표를 재부착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일반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단추형 1개 탈락 : 일반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귀표 탈락여부를 확인한 후 탈락 된 소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



질의 33.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보존기간은?

답변요지

- 개체식별대장은 해당 소의 도축·폐사 또는 수출 등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함.



질의 34. 농가 등이 시중에서 귀표를 구매하여 부착해도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관련 별표4에 귀표의 규격, 부착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한 것은 귀표의 무단사용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여 쇠고기 이력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함. 따라서 시중에서 아무 귀표나 구매하여 소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는 정부가 구매하여 공급한 귀표를 소에 부착하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만 거래와 도축 등이 가능함. 참고로 농장에서 소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귀표를 추가 부착하는 것은 가능함.



질의 35. 소의 귀표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답변요지

-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개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국가를 의미하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련번호 8자리를 연달아 표시한 후 마지막 숫자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체크번호로 구성됨.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소의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소의 종류와 성별, 소의 사육자 및 소재지, 수입소의 원산지 등의 정보가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됨. 참고로 부여된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음.

 **질의 36.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를 거래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법 제6조에 따라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거래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법에서는 사육 중인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부착은 예외이지만,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음.

이는 소싸움과 같이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함.

시행령 제3조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귀표 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귀표부착 예외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를 받은 위탁기관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귀표를 부착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 거래하여야 함. 또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축도 할 수 없음. 다만 사육하던 소를 도축장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소유주 등이 도축장경영주에게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도축장경영주는 검사관에게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귀표 미 부착소가 도축 의뢰 되었음을 신고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축은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극히 일어나기 드문 일임.



질의 37. 가축시장에서 구입한 송아지의 소유자가 「개체식별대장」에는 이전 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양수자의 법적 이행사항은?

답변요지

- '08.12.22.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육농가에서 소를 거래한 경우에는 관할 위탁기관에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위탁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에 소의 거래로 인한 사육자 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하게 됨. 만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11.6.22 부터 적용)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질의 38. 소의 귀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개체 식별번호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소의 출생일 등의 정보 수정도 가능한지?

답변요지

- 위탁기관에서는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 부착한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소의 정보를 정확히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개체식별번호의 입력이 잘못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함. 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위탁기관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변경신고서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소의 출생일, 사육농가명 등의 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함.



질의 39. 사육중인 소의 정보가 「개체식별대장」에 잘못 등록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8조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따라서 등록된 정보의 변경,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제출하여야 함.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서식에 변경신고 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가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누락 또는 오류수정의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변경신고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질의 40. 남편이 소유자인데 사망하여 가족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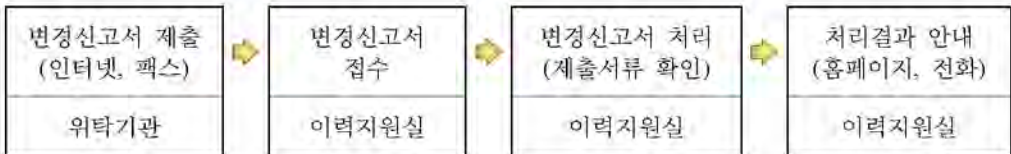
-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내용 중 소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개시한 날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함. 따라서 소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소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변경요청하면 됨. 다만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41.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전산에 등록된 소의 정보는 절차를 거쳐 수정이 가능함. 변경신고에는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공통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소 개체식별대장에 정보가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수정하는 경우로 나뉨. 이때 사육농가는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유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정보변경을 신청하면 처리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질의 42. 변경신고서 증명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요지

-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에 제출할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증명서류는 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다름. 사육자 성명의 변경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제출하고, 위탁기관명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전

위탁기관의 확인서(다만, 변경전 위탁기관에서 직접 신청시 생략), 법인명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상응할 만한 서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사육소재지 및 사육개시일의 변경 요청시에는 위탁기관장 명의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43.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누락·오류 수정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답변요지

○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누락, 오류 수정시 사안별 제출 증명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누락, 오류 내용	증명서류
출생(수입·수출)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사본, 수의사 진단서(암소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일자가 신고일자 및 전산등록일자와 동일하거나 앞서야 함 -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수의사 진단서에는 출생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진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우판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로 변경하는 경우(젓소·육우 ⇒ 한우)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혈통증명서(3년미만), 수의사진단서(3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가 아닌 소로 변경하는 경우(한우·젓소·육우 ⇒ 젓소·육우) ※ 수의사 진단서에는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진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암수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해당소의 사진 등 * 수소 → 거세우로 변경은 위탁기관에서 수정 가능
부모 개체식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사본, 혈통증명서, 친자확인 증명서,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송아지개체식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출생등 신고서 사본 및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해당소의 귀표부착사진 등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 증명이 가능한 서류
양도·양수연월일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출생등 신고서 사본,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등 - 양도·양수일자가 및 전산등록일자와 동일하거나 앞서야 함.
양도·양수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출생등 신고서 사본,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 양도·양수가 아닌 사망·승계 등으로 가족간의 소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폐사 개체식별번호, 일자,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 폐사증명서 등 증명 가능한 서류
개체상태 변경 (폐사·도축 →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의 귀표가 생체에 부착된 증빙사진 첨부 ※ 단, 도축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변경불가

○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변경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변경항목	증명서류
성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위탁기관명	○ 변경 전 위탁기관의 확인서 ※ 단, 변경 전 위탁기관에서 신청한 경우는 변경신고서만 접수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증(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사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사육소재지	○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사육개시일	○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 증명서



질의 44. 소의 소유자가 소의종류 중 한우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한우판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소유자가 변경 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요지

- 소의 소유자 등이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종축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은 한우판별기준에 따라 정보변경이 되지 않는 소의 판별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개체식별대장의 정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음.

3 소 도축단계



질의 1. 도축 이전 도축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동 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전산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아울러 귀표가 위·변조되었는지 등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질의 2.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소가 도축된 후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변요지

-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도축검사증명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소를 도축 한 후 검사관이 발급하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축산법에 의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함.



질의 3. 도축장에서 묶음번호 표시가 가능한지?

답변요지

- 도축장에서는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질의 4. 도축장에서 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답변요지

- 도체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라벨프린터, 귀표 또는 바코드 확인 편리를 위해 스캐너 등과 인터넷이 가능한 PC가 비치되어야 함.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사실에는 DNA시료채취 및 건조 등을 위해 시료건조기, 초음파소독기 등이 있어야 함.



질의 5. 도축업 영업자는 장부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요지

-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축처리결과를 쇠고기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하고 날짜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함.



질의 6. 도축장에서도 DNA동일성검사용 시료채취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시행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도축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DNA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우송하여야 함.



질의 7. 도축단계에서 신고하는 내용과 신고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업자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자체프로그램(ERP)에 도축검사신청서 정보(검사신청인과 도축 의뢰인의 인적사항,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접수번호, 소의 종류, 성별, 연령, 생체량(도체중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검역계류장 도착일, 신청연월일과 도축결과)를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송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직접 앞서 말한 도축검사신청서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함. 또한 검사관은 도축검사결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결과를 각각 「개체식별대장」에 입력해야 함.



질의 8.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도축이 금지되는 소는?

답변요지

- 2009.6.22.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어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소를 도축장으로 이송 중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업 영업자가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도축 할 수 있으나 도축 신청인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함.



질의 9.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가 도축 의뢰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0조에 따라 도축장영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귀표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쇠고기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가 도축이 의뢰되면 당해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즉시 사실을 검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검사관은 도축 금지 사유를 도축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도축 의뢰된 소를 출하자에게 돌려보내야 함. 아울러 검사관은 해당 소의 소유자를 시·도에 보고하여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의 조치가 관할 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도는 관할 위탁기관에 당해 소의 귀표부착 또는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소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법에 따른 처분 등을 조치하여야 함. 이와 별도로 도축이 금지되어 반송된 소의 소유자는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을 위해 관할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마친 소는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도축출하가 가능함.



질의 10. 소의 귀에 귀표가 1개만 부착된 경우에도 도축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에서는 귀표 탈락 등에 대비하여 소의 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좌·우에 1개씩 2개를 부착하고 있음. 그러나 쇠고기 이력제 시행이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가축공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 등에서 부착한 귀표는 1개만 부착된 경우가 있고, 1조를 부착하였어도 한쪽 귀에 부착된 귀표가 탈락된 상태로 도축 의뢰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도축장에서는 부착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가능하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과 일치하며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었으면 해당 소를 도축할 수 있음.



질의 11. 도축 의뢰된 소의 좌·우 귀에 부착된 귀표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소의 귀에는 개체식별번호가 동일한 귀표가 좌·우에 1개씩(일반형, 단추형)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과거 종축개량사업 등에서 부착한 귀표는 한개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귀표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도축할 수 있음.

또한 소의 좌·우 귀에 부착된 귀표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둘 중 한 개의 개체식별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브루셀라검사증명서 또는 개체식별확인 증명서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면 해당 소의 도축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검사관은 관할 시·도에 신고하여 귀표의 위·변조 또는 부정한 행위 여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시·도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행위자를 처분할 수 있음.

추가로 한쪽 귀에 부착된 귀표는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쪽 귀에 부착된 귀표는 미등록되어 있으며 이 미등록된 귀표번호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번호로 도축을 신청하여 「개체식별대장」에 도축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개체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질의 12.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거세우에 정상귀표가 부착되어 있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경우에 별도 증명서류가 없어도 도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거세우를 포함하여 모든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 도축 할 수 있음.

다만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 소는 증명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통해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의 확인이 용이할 것임.



질의 13. 도축 의뢰된 소의 사육월령과 「개체식별대장」 등록월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답변요지

-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 받은 기관에서는 신청인이 기재한 소의 월령 등의 정보를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와 비교하여 내용이 다른 경우 경우 신청인이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일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소의 월령과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의 도축이 의뢰되면 도축장 경영주는 해당 소의 도축을 잠시 보류하고 도축 의뢰자가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위해 해당 소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도축하여야 할 것임.



질의 14.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소유자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도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는 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2개월이므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명이 불일치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일치하는 등 도축을 금지 할 만 한 사유가 없으면 도축하여야 함.

다만 소의 소유자 등이 양도·양수 신고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법에 따른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임.



질의 15. 도축 의뢰된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소 운송기사 등이 해당 소의 귀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처리 방법은?

답변요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는 개체식별 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소의 귀에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의 「개체식별대장」 등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축을 금지하고 출하자에게 반송조치 하여야 함.

다만 도축장으로 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진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신고하여 새로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 도축이 가능하나 운송기사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것임.



질의 16. 이미 도축 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도축 의뢰된 소의 처리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한 소가 발견되면 해당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검사관은 귀표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고, 해당 소가 질병감염 등의 문제가 없어 도축할 수 있는 소로 판단되면 새로운 개체식별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 도축을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관은 시·도에 먼저 보고하여 당해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재발급하기 위한 소의 정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시·도는 소의 소유자 및 관할 위탁기관을 통해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활용하여 공통신고사항, 출생신고, 양도·양수 정보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이를 검사관에게 통보하고, 소의 정보를 통보받은 검사관은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함.

개체식별번호 재발급 요청을 받은 이력지원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여받은 ‘이력지원실 부여 개체식별번호’군에서 빠른 번호 순서대로 새로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의 이력정보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한 후에 검사관에게 개체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검사관은 해당 소가 도축될 수 있도록 통보 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축장 경영주에 알려주고 관할 시·도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시·도에서는 개체식별번호가 이중 부여된 사유 등을 출하농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행위자 등을 처분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관리 소홀로 밝혀지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질의 17. 귀표 미부착 소를 반송 조치한 경우에 검사관이 시·도에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해당 소는 관할 위탁기관에서 귀표부착 또는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도에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함.



질의 18.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를 반송하였으나, 당일 등록 후 다시 도축을 의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귀표는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법 제10조에 의하여 도축 금지 대상임. 따라서 검사관은 해당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농가로 돌려보내야 함.

돌려보낸 소가 등록을 마쳐 당일에 도축을 다시 의뢰한 경우에는 소의 질병이나 다른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에 도축이 가능함. 다만 해당 소는 최초 도축 의뢰시 도축금지 대상이었으므로 사실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해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질의 19.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번호가 없는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 도축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모든 소에는 양쪽 귀에 각각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가 1개씩 부착·관리되어야 하지만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재부착용귀표에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당해 소에 재부착하고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음. 이는 부정행위 의도를 가진 자가 귀표를 고의로 제거하고

시중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구매하여 다른 소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출하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와 도축을 할 수 없음.

이에 소 사육농가는 관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번호가 기재된 귀표로 바꾸어 부착하여야 함. 또한 위탁기관은 관할지역에 사육중인 소가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하고 있으나 관리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하고 있는 소를 파악하여 그 귀표를 제거하고 관리번호가 기재된 재부착용귀표를 다시 부착한 후에 관리번호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도축장에서는 재부착용귀표가 부착된 소가 도축 의뢰되면 「개체식별대장」에 관리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관리번호가 등록된 소에 한하여 도축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가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검사관은 당해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신청인에게 반송한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시·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귀표의 위·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탁기관은 당해 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관리번호가 표시된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고 관리번호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참고로 귀표의 위·변조 우려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부착용귀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모든 소에 귀표가 부착되게 되어 관리번호가 표시된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에 한하여 브루셀라병 검사 시에도 인정하고 있음.



질의 20. 도축 의뢰된 소가 젖소이며 발급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도 젖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체식별대장」에는 육우로 등록된 경우 처리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장 경영주는 도축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확인시 중요 정보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그 과정에서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 소의 종류, 소의 소유자 등의 정보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축을 잠시 보류하고 도축 의뢰자가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위해 해당 소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도축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의 종류가 수정되지 않고 도축 신청된 경우 등을 대비하여 검사관이 육안검사 등을 통해 소의 종류를 최종 판정한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개체식별대장」에 송신하면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가 변경등록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특히 사육농가의 사정에 따라 홀스타인 미경산우를 육우로 등록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젖소로 용도 변경하여 사육하다가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도축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질의 21. 소의 출생후 도축출하까지는 한우로 「개체식별대장」에 등록 되어 있으나, 도축과정에서 위생검사관이 육우로 판정한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변요지

- 한우 여부 판정은 위탁기관에서 사육농가로부터 소 출생 등 신고를 받아 「개체식별대장」에 등록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한 ‘한우기준’에 의해 판별하여 등록(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소가 도축 의뢰될 때에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관이 소가 도축되기 전에 외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의 종류를 다시 확인 후에 도축하고 있음.

검사관이 육안검사 등을 통해 소의 종류를 최종 판정시 육우로 판정하였다면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개체식별대장」에 송신하면 「개체식별대장」 등록정보가 변경등록 됨. 이 변경정보가 최종 소의 종류가 됨



질의 22. 재부착용귀표가 부착되어 도축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대장」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개체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개체조회란에서 재부착용귀표번호를 선택한 후 6자리의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이 나타남. 동 자료를 인쇄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면 검사관은 인쇄된 자료와 실제 소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됨.



질의 23. 탈락한 귀표를 본드 등으로 다시 부착하여 도축 의뢰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요지

- 도축 의뢰 소의 귀에는 반드시 귀표가 정상적으로 부착되고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도축이 가능함. 이송 중에 탈락되었다며 철사나 본드 등으로 다시 부착하여 도축을 의뢰한 경우에는 도축을 금지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시·도는 해당 소의 귀표 위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소유주 등을 처분하고, 당해 소에 정상적인 귀표가 다시 부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참고로 질병 등으로 도축금지 대상소를 도축하기 위해 귀표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어 귀표 탈락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하고 있으나 귀표를 칼로 잘라 다시 붙이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축장에서는 귀표 확인시 특히 유의하여야 함.



질의 24. 생고기로 반출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함. 따라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생고기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질의 25.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머리, 내장 등 부산물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도축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법 제2조제12호에서 개체식별쇠고기는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 정의함.

따라서 부산물인 소의 머리, 뼈, 내장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도축장에서 부산물에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질의 26.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에 부착하는 라벨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답변요지

- 법에서는 라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육의 갈비 내부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도록 하고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라벨을 부착하도록 정함. 이는 갈비 안쪽이 습기와 지방이 적어 라벨의 부착력이 높기 때문임. 훼손과 탈락의 염려가 없다면 다른 부위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나 라벨이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지육을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질의 27. 도축된 소에서 수거한 귀표의 처리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즉시 귀표를 수거·파쇄 하여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법에서 규정함. 이는 귀표의 위·변조와 부당 사용을 방지하여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도축업 영업자는 책임 관리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도축된 소에서 수거한 귀표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

4 쇠고기 포장처리단계



질의 1.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야 할일은?

답변요지

-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하고(법 제4조), 모든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함.(법 제11조) 또한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지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6)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구분되어 신고방법과 장부관리 의무를 달리하게 됨.



질의 2.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답변요지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이 출력 가능한 저울이 있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 신고할 수 있어야 함.



질의 3.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해야 하는 업소의 범위는?

답변요지

-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전산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업소에서는 쇠고기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11.12.22부터 적용) 하여야 함. 따라서 해당 업소에서는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질의 4.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와 장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요지

-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은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은 자체 장부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질의 5.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개체식별대장」에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법 25조).



질의 6. 소포장된 쇠고기의 중량을 합하여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해도 되는지? 또한 판매 및 반출 실적도 중량을 합하여 신고 해도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여러 개의 소포장된 쇠고기를 하나의 박스에 포장 가능하며, 이 경우 고기의 뒤바뀜 방지, 매입처에서의 입고관리 편의제공 등을 위해 포장 겉면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은 포장처리일, 개체식별번호, 매입처, 원료 또는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 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반출실적도 판매·반출일, 개체식별번호, 원료 또는 부위, 판매·반출처가 동일하면 총수량으로 신고 가능함.



질의 7. 1년에 소 한 마리를 가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이력제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답변요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개체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1년 중에 소량의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당해 업소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전산신고 대상이면 포장처리실적을 반드시 전산신고 하여야 함.



질의 8.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납품받은 부분육을 입고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포장처리실적을 전산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포장육을 원료육으로 납품받아 재포장 하지 않고 납품받은 그대로 판매·반출할 수 없음. 이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함께 되어있는 업소로 판단되어 이에 준하여 설명하고자 함. 납품받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지 않고 입고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차목에 정한 거래내역서에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거목에 의하여 영업자간(「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질의 9.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 실적을 전산 신고시 신고내용과 방법은?

답변요지

-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에는 포장처리한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포장처리일, 개체식별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처(상호·사업자번호)입(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3).



질의 10.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 실적을 부위별로 신고하지 않고 1마리 전체를 합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별지4호서식에 따라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은 포장처리일, 개체식별번호, 원료 또는 부위, 무게, 매입처별로 구분하여 기록 또는 신고하도록 정함. 따라서 소 1마리의 포장처리실적을 합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함.



질의 11. 부위와 등급이 같은 2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하나로 포장하여 묶음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2개를 모두 표시하여도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한 경우에는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영세한 업소가 많은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명절 때 갈비 등 선물세트를 많이 제작하거나 자투리 고기 등으로 분쇄·세절육을 만드는 경우 등에 여러 개체식별쇠고기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표시방법임. 따라서 모든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는 있음. 사례와 같이 2개의 개체식별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이 같아 하나로 포장할 경우에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별표7에 의한 별지 10호서식)를 기록·보관하였다가 구매자가 요청시 제공하여야 함.



질의 12. 도축장에 연접해 있지 않고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임. 이력제 시행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도축장에 연접해 있지 않고,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라 할지라도 입고된 개체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한 후에는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고,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 실적을 기록·관리하여 기록 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질의 13.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양념육을 생산하는 업소에서도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범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념육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거래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됨.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12 제4호 가목에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양념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제21조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질의 14. 쇠고기 이력제에서 부산물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부산물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12 제4호 차목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진열·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도록 정함. 이 경우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의미하므로 부산물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해석할 수도 있음.

그러나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산물에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질의 15.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축산물 운반업자에게 판매하고 운반업자가 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명세서는 운반업자에게 제공하면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따라서 운반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면 됨. 이 경우 운반업자는 동 서류를 해당 구매업소에 전달하여야 함



질의 16. 축산물가공업자가 한우고기를 분쇄후 포장하여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양념을 추가하여 즉석제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분쇄육에 표시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 가공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포장처리실적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됨.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12에 따라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질의 17. 묶음번호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는지?

답변요지

- 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이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하며,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하거나 숫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시(2009년 6월22일 9번째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 LOT 09 0622 009



질의 18. 묶음번호를 만들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다수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등급표시 의무부위는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소의 종류(한우는 한우끼리)에 한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질의 19.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자율표시 부위를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는 부위와 등급에 따라 맛이 달라 유통시장에서 경제적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위와 등급을 구분함. 이중 판매단계 등급 의무표시부위는 5개 대분할 부위(등심, 안심, 채끝, 갈비, 양지)이며, 통상 소 1마리를 도축하여 얻는 쇠고기의 56%를 차지하고 경제적 가치는 68%정도임. 따라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묶음번호를 구성할 경우 등급 의무표시 부위는 반드시 동일한 등급끼리 묶음번호를 구성하여야 함.

반대로 등급 자율표시 부위는 등급이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혼재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등급 의무표시 부위와 자율표시 부위를 서로 혼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등급끼리 혼재하여야 하며, 등급이 다른 경우에 혼재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없음. 이는 소비성향과 등급간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에 서로 혼재할 경우 식육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기 때문임.

참고로 현재까지 쇠고기 포장처리단계에서 포장육에 별도로 등급을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음.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축산물표시기준”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할 경우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 의무표시 부위인 5개 대분할 부위는 등급을 표시토록 함. 다만, 등급의무표시 부위와 자율표시 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2.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4),10))



질의 20. 묶음번호표시 형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부위별 관리번호까지 추가하여 묶음번호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요지

-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예시> LOT 20090622 001)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업소에서 표시한 묶음번호와 쉽게 구분되도록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여 LOT+연월일+일련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거나 부위별 관리번호 등 임의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업소에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질의 21.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아닌 일반업소에서, 전산신고를 희망할 경우 지정절차는?

답변요지

-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영업허가증 사본,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검역원에서는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 통지서’를 통해 해당 업소에 알려주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함.



질의 22. 종업원을 2명 추가 채용하여 5명이 넘게 된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전산신고 이행방법은?

답변요지

-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또는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는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하지 않고 장부 등에 기록관리 하던 업소에서 사업 확장 등으로 종업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농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고하여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11.12.22부터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업소에서 전산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방법 등을 방문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



질의 23. 유통단계 이력제 시행(6.22)전에 도축된 소의 갈비에 개체식별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이를 혼합하여 포장해도 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중요함. 지난 '09.6.22.부터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어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처리 할 때에는 개체별로 구분·포장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포장처리실적(도축장에 연결해 있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산 신고)과 판매반출실적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또한 쇠고기 이력제법에서는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09.6.22.이전 생산된 갈비에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갈비가 있다면, 서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함. 개체식별번호가 있는 갈비와 없는 갈비를 서로 혼재하여 포장하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없고, 표시한다고 할지라도 허위표시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됨. 아울러 갈비에 개체식별번호가 없고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도축검사증명서 등 관련서류에도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갈비는 따로 구분하여 포장하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이 경우 업소에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5 쇠고기 판매단계



질의 1.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정육점에서 하여야 할일이 무엇인지?

답변요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09. 6.22.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개체식별번호 기입란이 추가된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따라서 냉장 쇼케이스에 쇠고기 덩어리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전면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1회용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든 소형 접시에 쇠고기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판매대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라벨에 수기 등의 방법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된 쇠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하여 큰 덩어리에서 고기를 분할하여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 출때에는 포장지에 별도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다만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기로 기입하여도 됨. 아울러 거래내역서는 개체식별번호란이 추가된 변경 서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11.26>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거 래 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 식별번호)	매입처 ()



질의 2.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법 제11조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는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표시하여야 함.



질의 3. 판매장에 입고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답변요지

- 도체상태로 입고 된 경우에는 도체에 붙어 있는 라벨과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로 확인하고, 부분육으로 입고 된 경우에는 부분육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와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 된 개체식별번호로 확인함.



질의 4. 판매업소에서 이력제 시행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답변요지

-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를 판매하면 됨. 다만,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라벨이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하여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PC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공개하여 편리를 제공하는 사례는 있음.



질의 5.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산물 종류는?

답변요지

- 소의 부산물에는 머리, 꼬리, 족, 사골, 잡뼈, 내장, 간, 염통, 허파, 지라, 콩팥, 우낭, 혈, 원피, 지방, 도가니, 스지 등이 있음



질의 6. 냉장고에 보관하는 쇠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로부터 부분육을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었을 것이므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면 되겠으나, 지육상태인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분할·정형하게 되므로 하나의 바구니 또는 박스에 개체식별번호, 소의 종류, 등급 등이 동일한 쇠고기를 포장하여 담은 후에 각각 라벨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도 됨. 다만 진열하여 판매하기 위해 쇠고기 덩어리에서 일부를 분할한 후 다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참고로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소포장 쇠고기를 담아놓은 바구니와 쇠고기에도 라벨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보관하여 개체의 뒤바뀜을 방지하고 있음.



질의 7.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정육점식당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정육점식당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므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다만, 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질의 8. 소비자가 구매한 쇠고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출때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점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를 보관하고 판매하여야 함. 쇠고기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당해 개체식별쇠고기와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사례와 같이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하여 판매 중인 쇠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하여 비닐봉투 등으로 포장하여 출때에는 그 비닐봉투에 추가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진열판매대의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한 쇠고기를 포장한 비닐봉투에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는 행위는 불필요 한 것임.



질의 9. 젓소고기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09. 6.22.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의 적용 대상 소는 한우, 육우, 젓소 등 국내 사육중인 모든 소와 생산된 쇠고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젓소고기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질의 10. 냉장고 보관시 바구니나 박스에 개체식별번호가 동일한 개별 포장된 쇠고기를 한꺼번에 담아서 1개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해도 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추적의 시행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이를 위해 냉장고에 쇠고기를 보관할 경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발골·정형하여 부분육으로 포장되어 입고된 포장육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진열하여 판매하면 되나, 지육으로 입고된 경우에는 업소에서 자체 발골·정형 후에 부위별로 소포장한 경우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함. 사례와 같이 동일한 개체식별쇠고기를 하나의 박스나 바구니에 담고 식육표지판에 표시하여 함께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며 이와 달리 박스나 바구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함. 다만 다른 박스나 바구니에 보관된 쇠고기와 혼합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질의 11. 개체식별번호와 묶음번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 개체식별번호는 소 한 마리마다 부여된 하나의 고유번호로 사육중인 소의 귀표에 표시되었다가 도축이후 당해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됨. 묶음번호는 갈비 등 선물세트, 자투리 고기 등과 같이 유통여건상 불가피하게 여러 개체

식별쇠고기를 모아서 하나로 포장할 경우에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어 대표번호로 ‘묶음번호’를 새로 만들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영세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 많은 국내 식육유통시장의 어려운 여건과 복잡하고 다양한 축산물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표시방법 임.



질의 12.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답변요지

- 묶음번호표시는 쇠고기의 종류(한우는 한우끼리, 육우는 육우끼리)가 같고, 5개 대분할 부위(등심, 안심, 채끝, 갈비, 양지)는 등급(1++는 1++등급끼리)이 같은 경우에만 쇠고기 포장시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그 묶음번호(“LOT 090622 001”)를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하되, 구매자 등이 요청할 경우 구성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함.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이며, LOT+연월일+일련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도 표시가 가능함.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연월일	묶음번호	부위명	개체식별번호	구성 개체수
2009.6.22	LOT 090622 001	등심	002 027 080 289	2개
			002 027 080 290	



질의 13.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자율표시 부위를 서로 섞어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구이 형태의 국내 쇠고기 소비문화를 고려하고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방법을 정하여 공정한 식육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에 따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정함. 동 고시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쇠고기 판매시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함.

다만 대분할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등급은 5개 대분할부위(등심, 안심, 채끝, 갈비, 양지)에 한해 표시하도록 하고, 다른 5개 대분할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

태)의 등급표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등급 의무 표시 부위와 자율표시 부위를 혼재한 경우의 등급표시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자율표시 부위가 서로 등급이 다른 경우에 혼재하여 판매시 의무표시부위의 등급만 표시하면 당해 쇠고기의 등급을 올바르게 표시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등급이 다른 경우에 혼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판매가 필요한 경우 등급 의무표시부위는 반드시 동일한 등급끼리 묶음번호를 구성하여야 함. 반대로 등급 자율표시 부위는 등급이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혼재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등급 의무표시 부위와 자율표시 부위를 서로 혼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등급끼리 묶어야 하며, 등급이 다른 경우에 혼재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없음. 이는 소비성향과 등급간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에 서로 혼재할 경우 식육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기 때문임.



질의 14.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묶음번호로 표시되어 입고된 고기를 식육판매업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남은 경우에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함께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묶음번호가 표시된 쇠고기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다른 묶음번호 쇠고기를 새로운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없음. 따라서 팔다 남은 묶음번호표시 쇠고기와 개체식별쇠고기를 각각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함. 또한, 묶음을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5. 여러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다가 남은 자투리 고기를 분쇄하여 판매할 경우에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전산신고 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업소에서 팔다 남은 여러 개체식별쇠고기를 분쇄 또는 쇠절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쇠고기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5개 대분할 부위(등심, 안심, 채끝, 양지, 갈비)는 등급이 같아야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사례로 살펴보면 같은 종류의 개체식별쇠고기의 설도, 앞다리 등 등급 자율표시 부위의 고기가 남은 경우에는 자투리 고기 등을 모아서 묶음번호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요청시 제시하여야 함. 아울러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전산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거래내역서 기록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됨.



질의 16.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각각의 쇠고기를 판매시 하나의 판매 표지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입고된 쇠고기에 묶음번호가 표시되었을 경우 판매표지판에 그 묶음번호를 표시하고 당해 쇠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면 되나, 각기 다른 묶음번호를 하나의 표지판에 한꺼번에 표시하고 다른 묶음의 고기를 섞어서 판매할 수 없음.



질의 17. 묶음번호 구성 쇠고기를 다시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가능한지?

답변요지

- 묶음번호를 구성한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쇠고기를 개체별로 구분이 가능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 개체식별쇠고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매해야 하며, 이 개체식별쇠고기는 묶음번호를 한번 구성하였으므로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다시 묶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질의 18. 식육판매점에서 작성하는 거래내역서 내용을 전산신고 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점에서는 이력제 시행에 따라 보관·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이와 별도로 거래내역서 내용을 전산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판매장에서 전자저울 사용의 편리,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업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19. 소 한 마리분 부분육을 납품받은 경우 거래내역서에 39개 부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심 외 38개 부위를 한꺼번에 기재가 가능한지?

답변요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거래내역서 기재사항 중 부위명칭은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정해져 있으므로 39개 부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여러 부위의 개체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을 표시 후 개체식별번호를 한번만 표시하거나 개체식별번호를 맨 위에만 기재 후 아래 칸에는 ‘ ’을 표시하여 동일한 개체식별번호임을 나타낼 수는 있음.



질의 20.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서를 관리중인 판매장에서 부산물 거래내역서를 별도로 수기 작성하는 불편이 있음. 부산물도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지?

답변요지

- 법에서는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는데 필요하여 식육판매업자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식육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토록 함. 이에 쇠고기 이력제 전산시스템에서도 전산관리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점에서 쇠고기 입고 실적을 전산관리하면서 거래내역서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음. 부산물은 쇠고기 이력제 대상이 아니나 표준부위코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산 관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력시스템에 입력하여 거래내역서를 관리할 수 있음.



질의 21. 영수증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질의 22. 학교급식납품업소로서 전산신고 중인데 포장육 덩어리별로 전산 신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일 출고량을 한꺼번에 등록해도 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업소의 거래실적 전산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일부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전자저울을 이용한 개체식별번호 라벨표시의 편리 등을 위해 「개체식별대장」에 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하고 있음.

이때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그 포장처리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포장육을 납품 받거나 지육을 들여와서 발골·정형후 소포장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매업소에서 직접 전산등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소포장 단위별로 입력하여야 하나 지육으로 구매할 경우 부위명이 아닌 지육으로 입력도 가능함. 이럴 경우 매장에서 라벨 출력시 부위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감안하여야 함.

또한 축산물판매업자는 다른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거래시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작성하기 위해 당일출고량을 한꺼번에 등록하든지 포장육 덩어리별로 하든지 관계가 없으며, 거래내역서 기록에 준하여 등록관리하면 됨



질의 23. 판매점에서 지육상태로도 구입하고 부분육 또는 포장육도 구입하는데 개체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답변요지

- 도체·부분육 또는 포장육에 붙어 있는 라벨과 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 등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질의 24. 학교급식업체로서 임가공업체에 원료육을 공급하고 동 업체로부터 최종 소분가공제품으로 공급받아 각 급식사업장에 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이력제 시행에 따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요지


- 귀사의 영업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식육판매업임을 가정하여 설명하겠음. 귀사로부터 원료육을 공급받은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실적을 기록관리하

교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귀사에 다시 납품할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거래 내역서를 기록관리하고 납품받은 포장육을 그대로 각 급식사업장에 제공하면 됨. 또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공급받은 포장육을 다시 재 포장할 경우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질의 25. 판매장에서 스캐너 등 디지털 저울이나 컴퓨터 등의 장비도 필요한데, 영세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답변요지**

- 판매업소에서 진열장에 쇠고기를 전시, 판매할 경우 정부에서 홍보용으로 일부 공급한 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면 됨. 또한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편의를 위해 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저울을 보완하거나, 소형 라벨프린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부담도 크지 않으며, 그 비용이 약 8만에서 30만원 정도 소요됨. 판매장에서는 이력제 시행을 위해 새로이 전자저울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음.

 **질의 26. 식육판매업소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해 전자저울을 반드시 비껴야 하는지?**

 **답변요지**

- 식육판매점에서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은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되나,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를 위해 전자저울을 이용하면 편리할 수 있으나, 진열하여 판매하는 쇠고기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 판매하면 되고, 소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라벨 등에 수기로 개체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해당 쇠고기에 부착하고 판매하면 되므로 굳이 전자저울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음.

다만 라벨 등을 수기로 작성하기 불편하다면 슈퍼마켓에서 가격표를 붙이는 기구와 유사하고 가격도 전자저울의 교체나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라벨부착기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6 DNA 동일성 검사



질의 1. 유통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개체식별번호를 가짜로 붙여서 판매할 때 단속방법은?

답변요지

-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해당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임. 시·도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수입산과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음.



질의 2. DNA는 무엇이며,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답변요지

-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 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질의 3. DNA시료 채취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지?

답변요지

- DNA시료 채취는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임.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소의 소유자등이 사육하는 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임. 다만, 사육지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음.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며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질의 4. DNA동일성검사기관은 어디인지?

답변요지

- 소와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와 민간 검사기관 등 13 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함. 아울러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지도단속과정에서는 채취되는 시료에 대한 검사는 시·도에서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지도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함.



질의 5.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과 방법은?

답변요지

- 소의 소유자 등이 사육지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개체식별쇠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됨.

소의 소유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귀표가 부착된 소의 경우에는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개체식별쇠고기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을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해서 각각의 시료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함.



질의 6. 축산물품질평가원에 DNA동일성검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요지

-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방법은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한 후,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 메뉴로 들어가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의 아이디/패스워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부여하고 있음.



질의 7.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진위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답변요지

- 판매 또는 진열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와 영수증 또는 구입처 추적조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거나 이력제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함. 이를 위해 도축되는 모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하고 있음.



질의 8.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결과는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함.

다만, 사육지 시료에 대한 DNA동일성검사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이 판정함. 판정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함.



질의 9. DNA동일성검사를 하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DNA동일성검사는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한우판별 검사방법과 달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쇠고기 이력제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검증하는 방법임.

한우 여부 판정은 위탁기관에서 사육농가로부터 소 출생 등 신고를 받아 「개체식별대장」에 등록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한 ‘한우기준’에 의해 판별하여 등록(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개체식별대장」 등록된 소가 도축 의뢰될 때에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관이 소가 도축되기 전에 외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의 종류를 다시 확인 후에 도축하고 있음.



질의 10. 판매중인 쇠고기의 한우, 비한우, 젓소의 구분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답변요지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할 때에 인공수정증명서,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우여부를 판별한 후에 소의 종류를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서 소의 종류에 대해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자문단을 통해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도 판별이 어려운 때에는 DNA 친자감별법 등을 통해 최종 검증하고 있음.

쇠고기 유통과정에서는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최종 확인을 하고, 유통 중인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로 개체 동일성을 확인함. 참고로 DNA검사 결과 불일치로 나타난 경우 한우확인시험법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게 됨.



질의 11.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질의 12. DNA동일성검사와 한우확인시험법의 차이는?

답변요지

- 한우확인시험법은 한우판별 마커(marker)를 사용하여 한우형과 비한우형(육우, 젖소, 수입산 포함)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의 빈도 및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의 대립유전자가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한우형’과 ‘비한우형’으로 판별하는 것임.

DNA동일성검사는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으로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추천하는 9개의 마커와 소에서 특이적인 마커 2개 등을 사용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2개 내지 7개 내외의 염기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를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일치’와 ‘불일치’로 판정하는 방법임.



질의 13.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정육점의 경우 DNA 동일성 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은?

답변요지

- 소형 정육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 또는 둔갑판매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등과 일치 하는지를 우선 확인함. 이와 더불어 진열중인 쇠고기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 쇠고기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 가능함.



질의 14. 외국에서도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 중 DNA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DNA동일성 검사방법은 일본과 같은 방법이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회사(Genetic solution社)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 별로 검사를 실시하는 중임. 그 외의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쇠고기 이력제를 실시하여도 DNA 동일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질의 15.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몇 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료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요지

-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되며 기한이 경과되면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하며,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질의 16. 학교급식소 등에서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학교급식 또는 소비자 등이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있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됨

7 위반자 처분



질의 1.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시행으로 소 사육농가, 식육유통업체 등이 쇠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병과 할 수 있음.



질의 2.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답변요지

- 법 제6조에 의하면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의 거래와 수출도 금지함. 또한 법 제10조에 의하면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 또는 소에 부착된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도축을 금지함.

이와 관련하여 이력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귀표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음.




질의 3. 어떤 경우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지?

답변요지

- 소 소유자 등의 출생 등 신고, 도축업자의 도축신고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식육포장처리실적 신고 시 거짓으로 하거나,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질의 4.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및 부과금액은?**

 **답변요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이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함. 또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총액은 5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단위: 만원)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20	40	160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	20	40	160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20	40	80	320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0	100	200	400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0	60	120	240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30	60	120	240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0	60	120	240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0	100	200	400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	40	80	320



질의 5. 사육농가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답변요지

- 사육농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나, 식육판매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과·징수함.



질의 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답변요지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됨.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



질의 7.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

답변요지

- 개체식별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체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함. 그러나 개체식별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음.



질의 8. 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법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질의 9.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는지?

답변요지

- 농식품부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관한 신고접수를 위해 안전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1203번임.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의 원산지표시 관련상담 전화를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88-8112번임. 이와 별도로 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 식육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2633’임.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질의응답코너도 운영하고 있음.

8 기타 사례



질의 1.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한 소의 이력관리가 가능한 일인지?

답변요지

- 사육중인 소 한 마리마다 고유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므로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



질의 2. 우족, 꼬리, 뼈 등의 부산물도 이력관리 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 적용 대상은 개체식별대장에 관리되는 소와 쇠고기만 해당됨. 내장, 우족 등 부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음. 판매업소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자 하여도 도축장에서 소머리, 내장 등을 개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다만 개체관리가 가능한 대형 도축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쇠고기 이력제 정착과정에서 소비자 등의 요구에 따라 판매점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표시가 가능한 우족, 뼈, 꼬리 등 부산물부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부산물에 개체식별번호를 허위표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표시할 때 주의를 요함.



질의 3. 도축장에서 사용 중인 개체식별번호 표시라벨의 탈락이 잦아 불편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 현재 사용 중인 스티커 형태의 라벨은 지육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 잘 부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라벨을 고정할 수 있는 핀과 태그건을 모든 도축장에 배부하였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벨용지의 제질 변경 등을 검토 중이며 도축장마다 작업환경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용 등을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임.



질의 4. 정부가 보급한 라벨프린터와 라벨용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지

- 쇠고기 이력제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라벨의 규격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소 여건에 맞는 라벨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라벨을 지육에 부착하여 반출하면 됨.



질의 5. 도축장에서 사용중인 라벨프린터기 등 정부지원 장비가 고장시 처리 방안은?

답변요지

- 라벨프린터기 등이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품질평가사와 농림수산물식품부 이력지원실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지육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중인 여유 장비를 배치하여 라벨을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되며, 고장 장비를 수거·수리하여 재배치하게 됨.



질의 6.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요지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핸드폰에 국번 없이 6626 과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대형판매장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질의 7.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육농가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답변요지

- 판매되는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종류, 원산지, 등급, 소의 소유자, 소의 출생일, 소의 성별, 도축장명, 도축일, 등급판정결과, 소의 이동정보 등 10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육 중인 소의 경우도 조회하면 농가정보 등을 알 수 있음.



질의 8.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요지

○ 국내산 쇠고기이력제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도축업자 (수입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신청인, 출하농가, 소의 종류, 성별, 연령, 개체식별번호, 검사결과 등 도축처리결과를 전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상호, 주소, 판매량,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전산신고
식육포장 처리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② 판매실적을 장부에 기록 ③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이표에서 '식품접객업소 등' 이라 함)에게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단계별 전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시: 매입처 인적사항, 상호, 주소, 매입량,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전산신고 - 포장처리시: 매입처의 상호, 포장처리일, 수입유통식별번호, 포장처리량 등을 전산신고 - 판매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입쇠고기의 출고처 및 판매처, 매입량·포장처리량·판매량, 인적사항, 상호, 주소,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전산신고 ② 판매실적을 장부에 기록 ③ 식품접객업소 등에게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신고 대상업체: 종업원 10인 이상의 영업자 * 2011.12.22부터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영업자로 확대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산신고는 자율 ② 판매실적을 장부에 기록 ③ 식품접객업소 등에게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입 또는 판매시 전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시: 매입처 인적사항, 상호, 주소, 매입량,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전산신고 - 판매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입쇠고기의 출고처 및 판매처, 매입량·포장처리량·판매량, 인적사항, 상호, 주소,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전산신고 ② 판매실적을 장부에 기록 ③ 식품접객업소 등에게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신고 대상업체 :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 신고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겸업하는 식육판매업 	

VI

참 고 자 료

1. 쇠고기 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329
2. 쇠고기 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 330
3.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 연락처 / 331

1. 쇠고기 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 번호 (FAX)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031-390-5559)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2-500-2077 (02-504-09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31-463-159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비자보호과	031-467-4393 (031-467-1737)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041-580-33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378 (02-960-0164)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02-2080-6536~7 (02-2080-6549)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031-390-5553~4 (031-390-559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통관리팀	070-8282-2657~8 (031-436-8776)
전국한우협회		02-525-1053 (02-525-1054)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식육포장처리업체	미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02-2281-4446~7 (02-2281-4448)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 (02-582-3475)
한국낙농육우협회		02-588-7055 (02-584-5144)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031-391-9767 (031-395-6661)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031-394-8147 (031-394-8150)

2. 쇠고기 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 번호 (FAX)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6361-3862 (02-6361-3864)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3234 (051-888-320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63 (053-803-3439)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	032-440-4394 (032-440-8663)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4 (062-613-3969)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600-5444 (042-600-227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052-229-2919)
경기도	축산과	031-8008-4510 (031-249-2658)
강원도	축산과	033-249-2656 (033-249-4042)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732 (043-220-3919)
충청남도	축산과	042-251-2865 (042-251-2729)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2655 (063-280-2729)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061-286-6530 (061-286-4787)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3686 (053-950-2659)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765 (055-211-3659)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064-710-2142 (064-710-2129)

3.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 연락처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02-2657-7140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1-6
2	인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032-433-9550	인천 남구 주안6동 894-3
3	인천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032-933-3301	인천 강화군 강화읍관창1리117-1
4	경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031-230-4155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24-5번지
5	경기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762-934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3-5
6	경기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2-667-41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7번지
7	경기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443-38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7-11
8	경기	용인축산업협동조합	031-338-559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9
9	경기	평택축산업협동조합	031-683-2121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94-14번지
10	경기	이천축산업협동조합	031-634-6611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229-6
11	경기	(사)이천한우회	031-638-656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3리 34-6
12	경기	(사)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	031-981-1545	경기도김포시통진읍가현리536번지
13	경기	김포축산업협동조합	031-982-142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40-1
14	경기	안성축산업협동조합	031-8046-8073	경기도 안성시 계동 85-3번지
15	경기	여주축산업협동조합	031-883-233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247-3
16	경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031-771-220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731-5
17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031-962-64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18	경기	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863-22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5
19	경기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566-1151	경기도 남양주 지금동 137-3
20	경기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031-948-1986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2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21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031-534-0075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1-6
22	경기	가평축산업협동조합	031-582-41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66-1
23	경기	안성마춤한우회	031-674-5955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불현리 산5-1 농업기술센터내 안성마춤한우회
24	경기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031-534-334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458-1
25	강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033-252-3218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44-34
26	강원	원주축산업협동조합	033-744-680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397
27	강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033-646-0004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2번지
28	강원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033-573-5033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9-12
29	강원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033-671-886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44-1
30	강원	홍천축산업협동조합	033-434-341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5-6
31	강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	033-343-99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7-1
32	강원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033-334-231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하5리 131-1
33	강원	인제축산업협동조합	033-461-580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2
34	강원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33-681-356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19
35	충북	청주축산업협동조합	043-256-556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36	충북	충북낙농업협동조합	043-215-9334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51-2
37	충북	충주축산업협동조합	043-850-7561	충북 충주시 교현1동 766-28
38	충북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043-644-3185	충북 제천시 청전동 611
39	충북	보은축산업협동조합	043-542-220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00-5
40	충북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043-733-0516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
41	충북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043-833-8870	충북 괴산군 동부리 523-1
42	충북	진천축산업협동조합	043-533-81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96-2
43	충북	음성축산업협동조합	043-873-258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2리 314-9
44	대전	대전축산업협동조합	042-485-7543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68
45	충남	천안축산업협동조합	041-562-0527	충남 천안시 영성동 67-2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46	충남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041-852-4993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1-8
47	충남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041-856-2581	충남 공주시 신관동 534-2
48	충남	보령축산업협동조합	041-934-1554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49	충남	아산축산업협동조합	041-544-7744	충남 아산시 모종동 593-3
50	충남	서산축산업협동조합	041-665-7501	충남 서산시 동문동 795
51	충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041-730-2230	충남 논산시 내동 면학1길 54
52	충남	금산축산업협동조합	041-753-905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53	충남	부여축산업협동조합	041-832-2903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46-4
54	충남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041-837-1011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36
55	충남	서천축산업협동조합	041-953-196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
56	충남	청양축산업협동조합	041-943-480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57	충남	홍성축산업협동조합	041-632-661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58	충남	홍성낙농협동조합	041-632-449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59	충남	예산축산업협동조합	041-335-351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1-1
60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041-350-5554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6-1
61	충남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041-350-861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402-1
62	충남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041-633-077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9-1
63	전북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063-542-6786	전북 김제시 요촌동 288
64	전북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063-843-4103	전북익산시함라면함열리171
65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	063-653-044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66	전북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063-533-0841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5-15
67	전북	남원축산업협동조합	063-630-1121	전북 남원시 향교동 263-3
68	전북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063-433-6002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3-59
69	전북	임실축산업협동조합	063-640-3601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82-4

최고기 이력제 업무편람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70	전북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063-560-30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8
71	전북	전북한우협동조합	063-546-6923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68-6
72	전북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063-631-4541	전북 남원시 금동 280-24
73	전북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063-542-4224	전북 김제시 순동 761-1
74	광주	광주축산업협동조합	062-228-1085	광주시 동구 학동 46-2
75	전남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061-453-8003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02
76	전남	여수축산업협동조합	061-686-3900	전남 여수시 학동 191-1
77	전남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061-722-3700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35-2
78	전남	나주축산업협동조합	061-339-8000	전남 나주시 성북동 198-1
79	전남	담양축산업협동조합	061-380-5527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80	전남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061-383-454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77-11
81	전남	곡성축산업협동조합	061-362-8001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6
82	전남	구례축산업협동조합	061-782-2603	전남 구례시 구례읍 봉남리 155-5
83	전남	고흥축산업협동조합	061-835-8600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9-53
84	전남	보성축산업협동조합	061-852-3451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57-36
85	전남	화순축산업협동조합	061-374-1470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0
86	전남	장흥축산업협동조합	061-863-8232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2-19
87	전남	(사)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061-863-7911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리 5-1
88	전남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061-433-151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8-7
89	전남	해남축산업협동조합	061-534-960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90	전남	영암축산업협동조합	061-473-0880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5-1
91	전남	함평축산업협동조합	061-324-0046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번지
92	전남	영광축산업협동조합	061-353-801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1
93	전남	장성축산업협동조합	061-393-677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73-112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94	전남	전남낙농업협동조합	061-742-6330	전남 순천시 남정동 545-7
95	대구	대구축산업협동조합	053-957-9901	대구시 동구 동북로 466번지
96	대구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053-384-0110	대구시 북구 산격 2동 1691
97	대구	달성축산업협동조합	053-611-6205	대구시 현풍면 하리120-2번지
98	경북	포항축산업협동조합	054-274-612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4-9
99	경북	경주축산업협동조합	054-742-1981	경북 경주시 노서동 119-5
100	경북	김천축산업협동조합	054-433-2111	경북 김천시 성내동 8-1
101	경북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054-858-8530	경북 안동시 광석동 20-1번지
102	경북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054-482-2455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29-13번지
103	경북	영주축산업협동조합	054-634-0201	경북 영주시 영주1동 548-11
104	경북	영천축산업협동조합	054-333-1801	경북 영천시 문외동 40-29
105	경북	상주축산업협동조합	054-535-0222	경북 상주시 서문동 5-5
106	경북	문경축산업협동조합	054-553-7770	경북 문경시 흥덕동 223-3
107	경북	경산축산업협동조합	053-811-0131	경북 경산시 중방동 864-10
108	경북	군위축산업협동조합	054-383-3340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0-6
109	경북	의성축산업협동조합	054-834-5612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84-20
110	경북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054-873-1191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111	경북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054-733-7120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55-1
112	경북	청도축산업협동조합	054-373-5004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6리 693-11
113	경북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054-954-072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114	경북	예천축산업협동조합	054-654-232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3-11
115	경북	울릉농업협동조합	054-791-1005	경북 울릉군 도동1리 214-2
116	부산	부산축산업협동조합	051-338-0506	부산시 북구 만덕동 759-4
117	경남	양산축산업협동조합	055-383-7511	경남 양산시 북부동 382-1
118	울산	울산축산업협동조합	052-262-752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71-8 축산회관 1층 한우개량 사업소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19	경남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055-294-3872	경남 창원시 중동 401
120	경남	진주축산업협동조합	055-758-9111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45
121	경남	통영축산업협동조합	055-641-0511	경남 통영시 복신동 1-2
122	경남	사천축산업협동조합	055-851-58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
123	경남	김해축산업협동조합	055-333-8175	경남 김해시 서상동 269-6
124	경남	밀양축산업협동조합	055-352-0726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0
125	경남	거제축산업협동조합	055-639-120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910
126	경남	의령축산업협동조합	055-573-262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4-4
127	경남	함안축산업협동조합	055-583-208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21-1
128	경남	창녕축산업협동조합	055-533-8292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421-1
129	경남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55-673-4661	경남 고성군 읍송학리 262-14
130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	055-862-342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422-5
131	경남	하동축산업협동조합	055-882-880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08-3
132	경남	산청축산업협동조합	055-973-450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179-1
133	경남	함양축산업협동조합	055-964-0603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18-14
134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055-943-954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37-2
135	경남	합천축산업협동조합	055-933-0050	경남 합천군 합천리 668-1
136	제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064-756-42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073
137	제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064-733-14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99-22